

# 제1과목 증권분석

## 제1장 경기분석

### □ 경기변동의 개념과 측정

#### 1. 경기변동(경기순환)

● 경기변동과정 분류(2분법 구분) : 확장국면, 수축국면

#### ● 경기변동의 종류 ★★

\* 단기파동(키친파동) : 2~6년, 통화량 공급변동, 금리변동, 물가변동, 재고변동

\* 중기파동(주글라파동) : 10년 전후, 기술혁신 및 설비투자 내용연수

\* 장기파동(콘트라티에프파동) : 50~60년, 기술혁신 및 신자원 개발

#### ●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 ★

\* 불규칙성, 비대칭성(확장국면>수축국면), 지속성, 변동성(표준편차), 공행성(여러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

\* 성장순환, 건설투자↔해외부문, 1차 산업부문(농업생산) 비중 감소

● 경기변동의 원인 : 수요측면 충격, 화폐적 충격, 공급측면 충격, 불완전정보 하 경제주체의 기대

#### 2. 기본 거시경제지표: NIPA, BOP, 물가지수, 통화량, 통화유통속도, 금리 ★★

● 국민소득계정(NIPA :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 : 한국은행 ★

\* 한국은행이 분기별·연도별 측정하여 명목가격과 불변가격으로 구분

▶ 명목GDP(경상GDP) : 현재연도 GDP를 현재연도 시장가격(물가)로 표현(물가상승률 반영)

▶ 실질GDP(불변가격GDP) : 현재연도 GDP 기준으로 시장가격(물가)으로 표현(순생산량 증가 계산)

\*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 국내총생산(GDP) = 국내총소득(GDI) = 국내총지출(GDE) ★

● 국제수지(BOP : Business Of Payment) : 경상수지+자본수지+외환보유액 증감 ★

\* 경상수지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 자본수지 : 투자수지, 기타자본수지

\* 외환보유액 증감(준비자산증감) : 수취외화-지급외화

● 물가지수 : CPI, PPI, 근원물가지수, GDP Deflator

▶ 소비자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 : 통계청

• 도시가계의 생계비 및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 특징 :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 생산자물가지수(PPI : Producer Price Index) : 한국은행

• 상품의 수급동향을 반영한 물가지수 : 모든 재화의 생산자출하가격이 기준가이다.

▶ 근원물가지수 :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원유, 농산물 등)을 제외한 물가지수 ➡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활용

▶  $GDP\ Deflator = \frac{\text{명목GDP}}{\text{실질GDP}} \times 100$  ➡ 통화공급 목표설정 기준 ★

● 통화량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현행 통화지표의 종류 ★★**

- ▶ **신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포함)**
- ▶ **신M2 = 신M1 + 기간물 장기 예금 및 적금, 부금 + 화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만기 2년 이상 제외)**

● **통화유통속도(Velocity) = 명목GDP / 통화량(M)**

● **금리**

3. **시계열 통계분석**

● **경기변동요인 및 조정작업 ★**

구분	요인	조정작업
계절변동	1년 기준 규칙적 반복	전년동기대비증감율, 단순평균법, 이동평균법, X-11 ARIMA, X-12 ARIMA
불규칙변동	돌발적, 우발적	MCD이동평균법
추세변동	10년 이상(선, 곡선으로 형성)	장기이동평균법, 최소자승법
순환변동	완만한 진폭이 있음	-

□ **경기변동이론과 경기안정화 정책**

4. **경기변동이론 : 고전학과 ➡ 케인스학과 ➡ 통화주의학과 ➡ 신고전학과 ➡ 신케인스학과**

● **고전학과 : 1930년대 이전**

- \* **시장주의 : 보이지 않는 손(A. Smith)**
- \* **공급을 강조 : 세이의 법칙(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 \* **비자발적 실업 인정 X**

● **케인스학과 : 1930년대**

- \* **시장의 불안정성 : 수요를 강조**
- \* **비자발적 실업 인정 O**

● **통화주의학과(프리드먼) : 1960년대**

- \* **경기변동의 원인 : 통화 공급의 불안정**
- \* **정부의 자의적 통화주의 정책 비판 : 경제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 주장**

● **새고전학과 : 1980년대**

- \* **화폐적 경기변동이론(MBC : Monetary Business Cycle theory,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
  - ▶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경제주체들이 **불완전정보로 인해 경기변동을 촉발**
  - ▶ 경기변동의 원인 :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 변동**

\* **실물적 경기변동이론(RBC : Real Business Cycle theory)**

- ▶ 경기변동의 원인 : **실물적 요인(기술충격)**
- ▶ 경기변동의 **공행성이 잘 나타남**

● **새케인스학과 : 1980년대 (맨큐의 메뉴비용 : Menu Cost)**

- \*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
- \* **새고전학과의 방법론과 임금·가격의 경직성의 승수효과를 계승**

5.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파급경로**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경기안정화정책 ★

- \* 통화정책 : 통화량, 금리 등 ➡ 내부시차 짧고, 외부시차 길다.
- \* 재정정책 : 정부지출, 조세 등 ➡ 내부시차 길고, 외부시차 짧다.
- \* 경기안정화장치 : 정부보조금 등 ➡ 내부시차 = 0 ★

###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 \* 금리경로 : 통화량↑ ➡ 금리↓ ➡ 소비, 투자↑ ➡ 소득↑
- \* 자산가격경로 : 통화량↑ ➡ 금리↓ ➡ 주식, 부동산↑ ➡ 투자, 소비↑ ➡ 소득↑
- \* 환율경로
  - ▶ 환율↑ ➡ 자국의 화폐가치↓ ➡ 수출↑, 수입↓
  - ▶ 환율↓ ➡ 자국의 화폐가치↑ ➡ 수출↓, 수입↑
- \* 신용경로 : 통화량↓ ➡ 대출↓ ➡ 경제↓ ➡ 소비↓, 투자↓

□ 경기에측방법 : 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경제모형에 의한 경기에측

구분	내용
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경기종합지수(CI), 경기확산지수(DI)
설문조사에 의한 예측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태도지수(CSI)
경제모형에 의한 경기에측	시계열모형, 거시경제계량모형

### 6. 경기지표에 의한 경기에측방법

- 경기확산(동향)지수(DI : Diffusion Index) : 경기 동향만을 종합하여 지수화한 경기지표 ➡ 경기동향요인 파악 ★★★
- \* 경기판단 : 50기준

구분	DI < 50	DI = 50	DI > 50
경기판단	경기수축국면	경기전환	경기확장국면

#### \* 종류

- ▶ 역사적경기확산지수(HDI : Historical Diffusion Index) : 과거 확인
- ▶ 당면적경기확산지수(CDI : Current Diffusion Index) : 현재 확인
- ▶ 누적경기확산지수(CDI : Cumulate Diffusion Index) : 전환점 확인

- 경기종합지수(CI : Composite Index) : 경기변동에 민감한 개별지표를 종합하여 지수화 ➡ 경기수준 및 경기국면 측정 ★★★

#### \* 경기판단 ★★

CI 구분	경기에측
CI의 전월대비 증가율 +	경기확장국면
CI의 전월대비 증가율 -	경기수축국면

\* 진폭 및 방향, 국면, 전환점, 변동속도를 파악

\* 경기종합지수 구성 지표 :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

구분	지표명
선행지수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비율,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재수입액, 건설수주액, 종합주가지수,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 순상품교역조건
동행지수	비농가취업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기동율지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후행지수	상용임시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 소비재수입액, 회사채유통수익율

### 7.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에측방법

- 기업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 단기적 경기에측수단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경기판단 : 100기준 \*

구분	$0 < BSI < 100$	$BSI = 100$	$100 < BSI < 200$
경기판단	경기수축국면	경기전환점	경기확장국면

● 소비자신뢰지수(CSI : Consumer Survey Index) : BSI보다 선행(경기수축국면이나 경기저점을 예측에 유용)

구분	$0 < CSI < 100$	$CSI = 100$	$100 < CSI < 200$
경기판단	경기수축국면	경기전환점	경기확장국면

8. 경기전환점 예측방법 : 확정적 방법, 확률적 방법

● 확정적 방법(선행지수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 : 2연속 법칙, 3연속 법칙, 연속신호법칙, Hymans 법칙

\* 2•3연속 법칙 : 2번 연속 or 3번 연속 하락을 이용

▶ 문제점 : 거짓신호 多, 선행기간이 불규칙적

\* 연속신호법칙 : 선행지수 증가율(L)과 동행지수 증가율(C)의 변화를 이용하여 예측

\* Hymans의 법칙 : NC(변화 없음), P(고점이 다가옴), T(저점이 다가옴)로 구분하여 경기 예측 ★★★

● 확률적 방법 : Neftci 방법

\* Neftci 방법 : 연속분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예측(변화방향만을 예측)

□ 경제모형에 의한 예측

9. 시계열 모형 : 단순외삽모형, 자기회귀(AR)모형, 이동평균(MA)모형, ARIMA모형 ★

● 단순외삽모형 : 시간변수만 이용하여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모형

● 자기회귀(AR)모형 : 시계열의 과거관측치만을 이용하는 모형

● 이동평균(MA)모형 : 확률변수만을 이용하는 모형

● ARIMA모형 ★

\* 자기회귀(AR), 적분(Integration), 이동평균(MA)의 세 가지 필터를 적용

\* 구축과정 : 식별 ➡ 추정 ➡ 진단검증 ➡ 정확한 예측 ★

\* 특징 : 가장 간편한 방법, 모형의 모수치가 크게 변하지 X,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 가장 적은 모수로서 표현가능

10. 거시경제계량모형

● 추정, 검증, 시뮬레이션 절차 반복

● 시뮬레이션의 목적 : 모형의 적합도 평가, 정책효과 평가, 내생변수의 장래치 예측

● 유용성 : 경제전체파악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

## 제2장 기본적인 분석

□ 개괄

1.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

● 증권분석구분

구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	--------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Fundamental Analysis)	(Technical Analysis)
분석대상	경제요인, 산업요인 및 기업의 재무제표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흐름
목적	본질가치 추정	미래의 가격흐름 예측
용도	매매종목 선정	매매시점 파악

● 증권분석방법

- \*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 : 기업분석 ➡ 산업분석 ➡ 경제분석 (일반인)
- \*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 : 경제분석 ➡ 산업분석 ➡ 기업분석 (전문가, 일반적) ★

2. 경제분석 : 거시경제변수와 주가 관계

- 경기와 주가 : 주가는 경기에 선행함
- 통화량과 주가 ★

유동성효과(단기)	통화량↑ ➡ 유동성↑ ➡ 금리↓ ➡ 주가↑
소득효과(중기)	금리↓ ➡ 투자↑ ➡ 국민소득↑ ➡ 화폐수요↑ ➡ 금리↑
피셔효과(장기)	통화량↑ ➡ 인플레이션↑ ➡ 금리↑ ➡ 주가↓

● 통화구분 ★★

- \* 협의의 통화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포함)
- \* 광의의 통화 M2 = 신M1 + 가신물 정기예금및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사정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장기: 만기 2년 이상 제외)
-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기 2년 이상 기타 예수금

- 금리와 주가 : 이자율↑ ➡ 자금조달↓ ➡ 설비투자↓ ➡ 수익성↓ ➡ 주가↓

● 물가와 주가

- \* 완만한 물가↑ ➡ 실물경기↑ ➡ 기업수지↑ ➡ 주가↑
- \* 급격한 물가↑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주가↓
- \* 디스인플레이션 ➡ 물가/금리↓ ➡ 금융자산↑ ➡ 주가↑
- \* 스태그플레이션 ➡ 비용↑/구매력↓ ➡ 기업수지↓ ➡ 주가↓

● 환율과 주가

- \* 환율↑ ➡ 자국 화폐가치↓ ➡ 수출↑, 수입↓
- \* 환율↓ ➡ 자국 화폐가치↑ ➡ 수출↓, 수입↑

3. 산업분석

● Michael Porter 산업구조분석 ★★

- ① 진입장벽
- ② 기존업체간 경쟁강도 : 산업성장률↓ ➡ 경쟁강도↑ ★
- ③ 대체가능성
- ④ 구매자의 교섭력
- ⑤ 공급자의 교섭력

● 진입장벽 및 철수장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 ★★

- \* 진입장벽↑ / 철수장벽↑ : 수익성↑ / 위험↑
- \* 진입장벽↓ / 철수장벽↑ : 수익성↓ / 위험↑
- \* 진입장벽↓ / 철수장벽↓ : 수익성↓ / 위험↓
- \* 진입장벽↑ / 철수장벽↓ : 수익성↑ / 위험↓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제품수명주기분석(PCL : Product Life Cycle) ★**

단계	상황	수익성	위험
도입기	신제품 출하(매출↓, 광고↑)	↓	↑
성장기	시장규모 증대(매출↑)	↑	↓
성숙기	포화상태(기업 간 경쟁↑)	↑	↑
쇠퇴기	수요감소(대체품 출현)	↓	↑

□ 기업분석

4. 질적분석

● **Boston 컨설팅 제품구성 : 수익성과 성장성 기준 (질적분석기법) ★★★**

구분	수익성	성장성
Barking Dog	↓	↓
Cash Cow	↑	↓
Rising Star	↑	↑
Question Mark	↓	↑

5. 양적분석 : 재무비율분석

● **대차대조표(B/S : Balance Sheet)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 파악 (양적분석기법) ★**

- \* 자산 :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 부채 : 유동부채, 고정부채
- \* 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 **손익계산서(P/L : Statement of Profit and Loss) : 일정 회계기간의 재무상태 파악 (양적분석기법)**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매비 = 영업이익 + 영업외 이익 - 영업외 비용 = 경상이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

● **재무비율분석 : 수\*안\*활\*성 ★★★**

\* **수익성 지표 :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당기순이익 기준)**

▶ **총자본이익률(ROI : Return On Investment, 총자산이익률) : 자본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측정지표 ★★**

$$ROI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 \times 100(\%) = \text{매출액순이익률} \times \text{총자본회전률}$$

▶ **자기자본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 ★**

$$\begin{aligned} ROE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 \text{매출액순이익률} \times \text{자기자본회전률} \\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 \times \frac{\text{총자본}}{\text{자기자본}} \times 100(\%) = \text{매출액순이익률} \times \text{총자본회전률} \times \frac{1}{\text{자기자본비율}} \\ &= \frac{OI}{\text{자기자본비율}} \end{aligned}$$

▶ **납입자본이익률 : 배당률 산정목적**

$$\text{납입자본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납입자본}} \times 100(\%)$$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매출액순이익률 : 비용을 제외한 진정한 기업의 경영활동 측정 지표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안정성 지표 : 자기자본 기준

▶ 유동비율 : 단기 채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유동비율↑ ⇨ 기업지급능력↑) ★★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부채비율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비율측정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 고정비율

$$\text{고정비율}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 이자보상비율 ★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 활동성 지표

▶ 재고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 자산기준

$$\text{재고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평균})\text{재고자산}}$$

$$\text{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평균})\text{총자산}}$$

$$\text{고정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평균})\text{고정자산}}$$

▶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입채무회전율

$$\text{매출채권회전율} = \frac{\text{매출}}{(\text{평균})\text{매출채권}}$$

$$\text{매입채무회전율} = \frac{\text{매출}}{(\text{평균})\text{매입채무}}$$

\*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text{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 총자산증가율

$$\text{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총자산} - \text{전기말총자산}}{\text{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영업이익증가율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text{영업이익증가율} = \frac{\text{당기영업이익} - \text{전기영업이익}}{\text{전기영업이익}} \times 100(\%)$$

### 6. 시장가치비율 ★★

- 주당순이익(EPS : Earning Per Share)와 배당성향 ★

$$\text{EPS}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발행주식수}}, \text{ 배당성향} = \frac{\text{현금배당}}{\text{당기순이익}} \times 100(\%)$$

- 추가수익비율(PER : Price Earning Ratio) ★

$$\text{PE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이익}}$$

- 추가순자산비율(PBR : Price Book-value Ratio) ★

$$\text{PB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자산}}$$

- 추가현금흐름비율(PCR : Price Cash-flow Ratio) ★

$$\text{PCR} = \frac{\text{주가}}{\text{주당현금흐름}}$$

- 추가매출액비율(PSR : Price Sales Ratio) ★

$$\text{PSR} = \frac{\text{주가}}{\text{주당매출액}}$$

- Tobin's q = 자산의 시장가치 / 추정대체비용 ★★

$$\text{Tobin's } q = \frac{\text{자산의 시장가치}}{\text{추정대체비용}}$$

(q > 1 : 신규투자, q = 1 : 보류, q < 1 : M&A)

- 배당수익율과 배당률 ★

$$\text{배당수익율} = \frac{\text{1주당 배당금}}{\text{주가}}, \text{ 배당률} = \frac{\text{1주당 배당금}}{\text{액면가}}$$

- 재무비율분석의 한계점과 유의점 ★★

- \* 과거의 자료이므로 기업의 미래가치 분석에 한계성
- \* 기업마다 회계처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시 문제발생

### 7. 레버리지 분석 : 레버리지수 ⇨ 위험수 ★

- 영업레버리지 분석 : 고정영업비용이 있는 경우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영업이익 변화정도를 분석 ★

영업레버리지도(DOL :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 \frac{\text{영업이익의 변화율}}{\text{매출액의 변화율}} = \frac{\text{매출액} - \text{변동비용}}{\text{매출액} - \text{변동영업비} - \text{고정영업비}}$$

- \* 영업레버리지도(DOL)의 수치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고정영업비 O 경우 :  $DOL = 1$
- ▶ 고정영업비 X 경우 :  $DOL > 1$

\* 영업레버리지도(DOL) 결정요인 : 고정영업비↑, 매출액↓, 판매단가↓, 단위당 변동비용↑  $\Rightarrow$  DOL↑

● 재무레버리지 분석 : 고정재무비용이 있는 경우 영업이익의 변화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begin{aligned} \text{재무레버리지도(DFL :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 = \frac{\text{주당순이익의 변화율}}{\text{영업이익의 변화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영업이익} - \text{이자}} \end{aligned}$$

\* 재무레버리지도(DFL)의 수치

- ▶ 고정재무비 O 경우 :  $DFL = 1$
- ▶ 고정재무비 X 경우 :  $DFL > 1$

\* 재무레버리지도(DFL) 결정요인 : 영업이익↓, 이자↑  $\Rightarrow$  DFL ↑

● 결합(혼합)레버리지 분석 : 고정영업비용 및 고정재무비용이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세 후 순이익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begin{aligned} \text{결합(혼합)레버리지도(DCL : Degree of Combined Leverage)} \\ = DOL \times DFL = \frac{\text{매출액} - \text{변동비용}}{\text{매출액} - \text{변동비용} - \text{고정비용} - \text{이자비용}} \end{aligned}$$

□ 주식평가모형

8. 배당성장평가모형

● 정률성장배당모형 (항상성장배당모형) ★★

\* 가정 : 지속성장, 요구수익률 일정, 요구수익률 > 성장률 ★

\* 주가산정

$$P(\text{이번기간의 1주당 가치}) = \frac{\text{(다음 기간의 주당배당금)}}{k(\text{기대수익률}) - g(\text{배당성장률})}$$

\* 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한 주식 기대수익률 계산 ★★

$$k(\text{기대수익률}) = \text{배당수익률} \left( \frac{D_1(\text{다음 기간의 주당 배당금})}{P_0(\text{이번기간의 1주당 가치})} \right) + g(\text{배당성장률})$$

✓  $g(\text{배당성장률}) = \text{사내유보율} \times \text{자기자본이익률(채투자수익률)}$

✓  $\text{사내유보율} = 1 - \text{배당성향}$

✓  $\text{배당성향} = \frac{D_1(\text{다음기간의 주당배당금})}{\text{주당순이익(EPS)}}$

✓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 \frac{\text{주당순이익(EPS)}}{\text{주당자기자본}}$

● 제로성장배당모형 :  $g=0$ (성장성 X 경우)

● 고속성장배당모형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9. 이익평가모형 : 주식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주당이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주식의 가치

10.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 균형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 적정수익률 추정모형

11. PER(주가수익비율)모형 : 성장성, 위험, 회계처리방법 등 질적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

$$\text{PER(주가수익비율)} = \frac{\text{현재의 주가}}{\text{주당순이익 } PS}$$

12. PBR의 평가모형 : 기업의 자산 가치에 근거하여 현재 주가와 기업의 자산가치 비율로 상대가치평가모형

● PBR이 1이 아닌 이유 ★★

\* 시간성의 차이 : 과거 지향적

\* 집합성의 차이

\* 자산·부채의 인식기준 차이

13. EVA, EV/EBITDA

● EVA(Economic Value Added : 경제적 부가가치) ★★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비용을 모두 고려한 성과측정수단

\* 주주 부의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한 지표

\*  $EVA = \text{영업상이익} - \text{투하자본비용} = \text{세후순영업이익} - [\text{투하자본} \times \text{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EV(Enterprise Value : 기업가치)

●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

### 제3장 기술적 분석

□ 기술적 분석의 의미

1. 기술적 분석의 개념

●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비교 ★★

구분	기본적 분석 (Fundamental Analysis)	기술적 분석 (Technical Analysis)
분석대상	경제요인, 산업요인 및 기업의 재무제표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흐름
목적	본질가치 추정	미래의 가격흐름 예측
용도	매매종목 선정	매매시점 파악

● 기본가정 ★

\* 증권시장의 시장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수요와 공급은 이성적, 비이성적 요인이 지배하고 있다.

\* 주가는 추세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 추세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 일어난다.

\*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그 발생이유와 관계없이 시장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추적될 수 있다.

\* 지표에 나타난 몇 가지 주가변동 패턴은 스스로 반복한다.

● 장점 및 단점

\* 기업간의 비교평가 가능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시장변동 원인을 분석 X

2. 도표분석 : 라인차트(선도표), 바차트(봉도표)

□ 추세 이론 및 분석

3. 다우이론(Dow theory)

● 추세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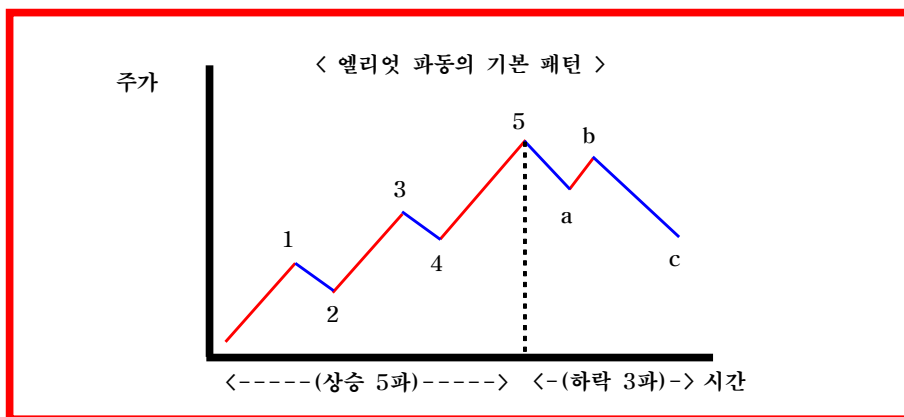
추세의 종류	내용
단기추세	매일의 단기적 주가변동(분석가치 X)
중기추세	✓ 3주~수개월 진행 ✓ 장기추세를 조정하려는 주가 반동 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 장기추세를 예측하고 추세전환시점을 포착
장기추세	1년 이상 주가변동

● 장기추세(주 추세)의 진행과정 : 매집 ➡ 마크업 ➡ 과열 ➡ 분산 ➡ 공황 ➡ 침체

추세종류		내용	
강세국면	매집국면	일반투자자 : 주식매도	전문투자자 : 주식매수
	마크업국면	거래량의 점진적 증가	
	과열국면	일반투자자 : 관심고조	전문투자자 : 주식매수
약세국면	분산국면	추가수, 거래량수 기술적 분석 투자자 : 수익수	
	공황국면	일반투자자 : 주식매수	전문투자자 : 주식매도 시기 탐색
	침체국면	경기과열	
약세국면	분산국면	일반투자자 : 주식매수	전문투자자 : 주식매도
	공황국면	주가가↓ ➡ 거래량↑	
	침체국면	일반투자자 : 주식매도	전문투자자 : 주식매매 X
		주가 수직하락 ➡ 거래량↓	
		일반투자자 : 주식매도	전문투자자 : 주식매수
		주가↓ ➡ 낙폭↓	

● 다우이론 한계점 : 국면판단이 느림

4. 엘리어트 파동이론 : 8번의 파동(상승국면 : 5개 파동, 하락국면 : 3개 파동)



● 파동구분

\* **충격파동**(impulse wave) : 시장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1, 3, 5, a, c)

\* **조정파동**(corrective wave) : 시장움직임과 다른 방향으로 형성(2, 4, b)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파동의 특징

구분		특징
충격파동	1번 파동	✓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 5개 파동 중 가장 짧다.
조정파동	2번 파동	✓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저점까지 하락 X(절대불가침의 법칙1) ★
충격파동	3번 파동	✓ 가장 강력하고 길며 거래량도 최고수준(절대불가침의 법칙2) ★
조정파동	4번 파동	✓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치지 X(절대불가침의 법칙3) ★
충격파동	5번 파동	✓ 추세의 막바지 국면 ✓ 거래량이 3번 파동에 비해 적게 형성
	a번 파동	✓ 상승추세가 끝나고 반대추세가 시작되는 출발점
조정파동	b번 파동	✓ 하락추세에 반발하는 매입세력이 시장에 출현(거래량이 적다.)
충격파동	c번 파동	✓ 3번 파동과 유사한 파동
		✓ 가격의 하락폭이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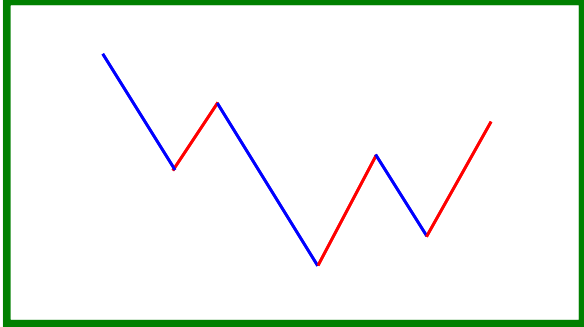
### ● 절대불가침의 법칙 ★★★

- \* 2번 파동 저점이 1번 파동 저점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 \* 3번 파동이 제일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 \* 4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칠 수 없다.

### ● 엘리엇 파동이론의 한계점 : 융통성이 많음(주관적) ★

### 5. 사계다 전법 ★

<b>삼공(三空)</b>	✓ 추가상승 시 공간(gap)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경우 ✓ 거래량 : 1공 < 2공 < 3공	
<b>삼병(三兵)</b>	✓ 적삼병 :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고 ✓ 흑삼병 :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고 ✓ 대세 반전의 전환시점을 예상	
<b>삼산(三山)</b>	✓ 하락세 반전 패턴 ✓ 헤드앤숄더형과 유사	

삼천(三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승세 반전 패턴</li> <li>✓ 역헤드앤숄더형과 유사</li> </ul>	
삼법(三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쉬는 것도 투자다.' : 휴식필요</li> </ul>	

6. 추세분석 : 일정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이용한 분석기법 (객관적 분석기법)

● 지지선과 저항선

- \* 지지선 : [저점 + 저점]을 연결한 선
- \* 저항선 : [고점 + 고점]을 연결한 선

● 추세선 ★★

- \* 상승추세선 : 저점의 상승을 연결한 선(상승추세)
- \* 하락추세선 : 고점의 하락을 연결한 선(하락추세)

● 이동평균선(MA) ★

\* 성질

- ▶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조만간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다.
- ▶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조만간 주가상승 가능성이 있다.
- ▶ 이동평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동평균선은 더욱 유연해진다.
- ▶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회귀변화**가 일어난다.

\* 분석방법

- ▶ 방향성 : 단기 ⇨ 중기 ⇨ 장기이동평균선
- ▶ 배열도
  - 정배열(상승국면) : 단기 > 중기 > 장기
  - 역배열(하락국면) : 단기 < 중기 < 장기
- ▶ 크로스분석 : Golden Cross(매입전략), Dead Cross(매도전략)

● 그랜빌(J. E. Granville)의 8가지 투자전략 :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관계 ★

\* 매입원칙 4가지

- ① 이동평균선↓ ⇨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 ② 이동평균선↑ ⇨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락
- ③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 반등
- ④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 ⇨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경우

\* 매도원칙 4가지

- ① 이동평균선↑ ⇨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
- ② 이동평균선↓ ⇨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승
- ③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상향X ⇨ 하락
- ④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경우

□ 캔들차트분석

7. 한 개 캔들 차트

종류	특징	모형
해머형 (망치형)	매수신호	
행잉맨형 (교수형)	매도신호	
상승살바형	매수신호	
하락살바형	매도신호	
십자형	추세반전 (종가와 시가 동일)	 <십자형> <강족십자형> <비석십자형>
유성형	매도신호 (하락반전)	
역전된 해머형	매수신호	

8. 두 개 캔들차트

종류	특징	모형
상승장악형	매수신호 (음봉 < 양봉)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하락장악형	매도신호 (음봉 > 양봉)	
먹구름형	매도신호 (전일시가 < 당일시가 / 전일종가 < 당일종가)	
관통형	매수신호 (전일시가 > 당일시가 / 전일종가 > 당일종가)	
상승반격형	매수신호 (전일종가 = 당일종가)	
하락반격형	매도신호 (전일종가 = 당일종가)	

9. 세 개 캔들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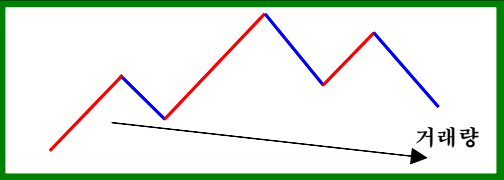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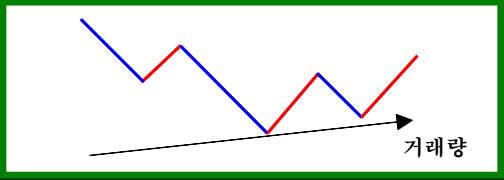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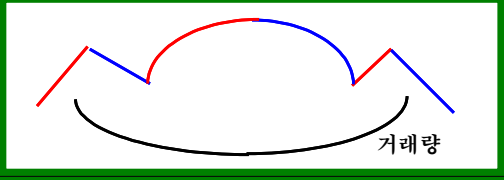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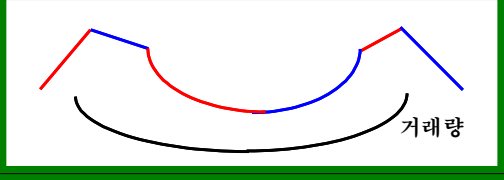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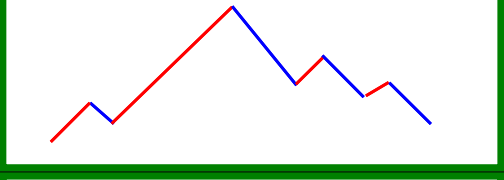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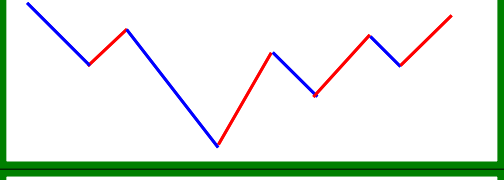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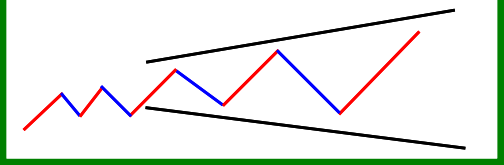
종류	특징	모형
셋별형	매수신호	
석별형	매도신호	
까마귀형	매도신호	

□ 패턴분석

10. 전환형(반전형) : 주가가 상승(하락)을 보이다가 하락(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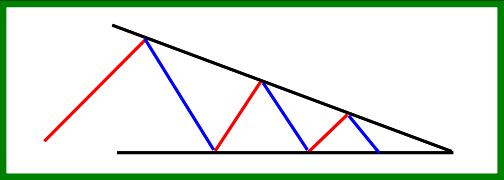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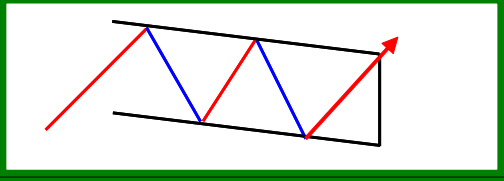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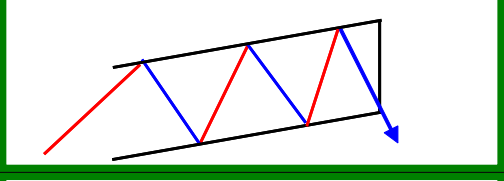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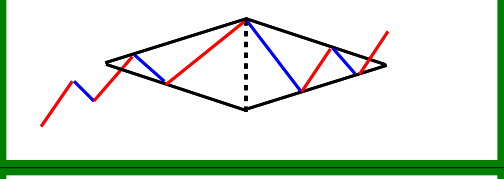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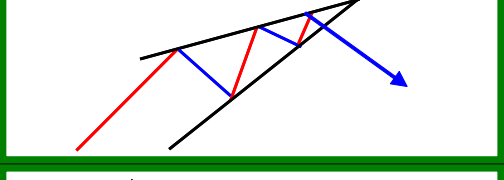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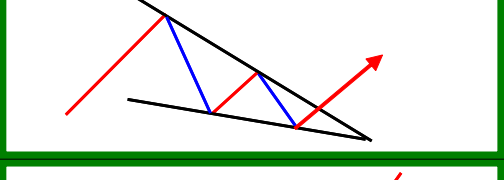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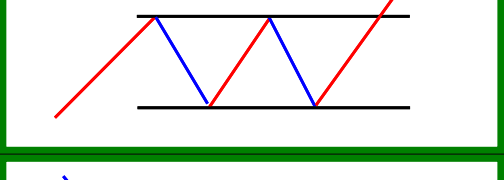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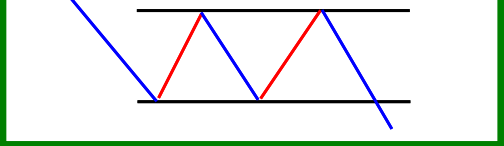
종류	특징	모형
----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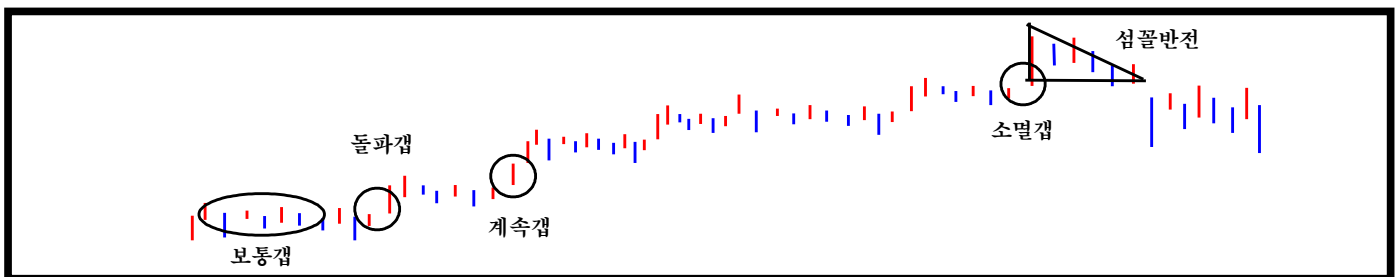
삼봉형 (헤드앤숄더형)	삼봉천장형	하락반전형 (거래량 : 점점 하락)	
	삼봉바닥형	상승반전형 (거래량 : 점점 상승)	
원형	원형천장형	하락추세 반전형 (거래량 : 주가와 반대)	
	원형바닥형	상승추세 반전형 (거래량 : 주가와 동일)	
V자 모형 단기간 급등(급락) → 급락(급등)	천장V자 모형	하락추세 반전형	
	하락V자 모형	상승추세 반전형	
확대형	고점은 계속 상승하고 저점은 계속 하락(진폭이 큼)		

11. 지속형 ★★★

종류	특징	모형	
삼각형모형	대칭삼각형모형	일반적 형태	
	상향직각삼각형모형	상승반전	

	하향직사각형모형	하락반전	
깃대형	상승깃대형	상승기형	
	하락깃대형	하락기형	
다이아몬드형	주가의 큰 변동 후 나타나는 패턴 (주가상승시 : 거래량 증가, 주가하락시 : 거래량 하락) 역삼각형+대칭삼각형		
췌기모형	상승췌기형	주가 지속적 하락	
	하락췌기형	주가 지속적 상승	
직사각형모형	상승직사각형모형	상승형	
	하락직사각형모형	하락형	

12. 주가 갭



- 보통갭 : 기술적의미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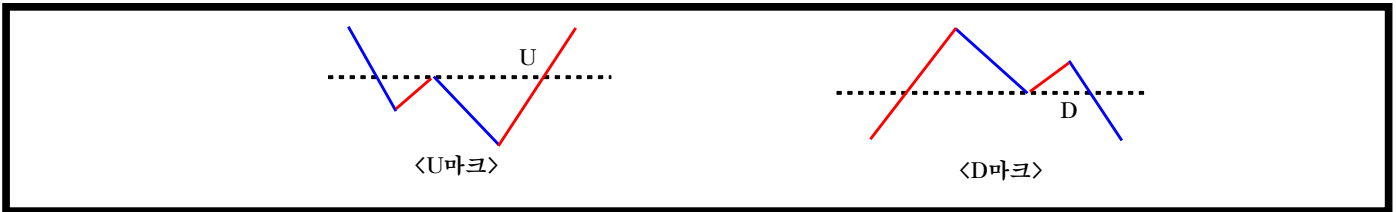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돌파꺾** : 주가가 고점경계선을 상향돌파할 경우
- **계속꺾** : 주가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가꺾
- **소멸꺾** : 추세반전 직전에 주로 나타남 ★
- **섬꼴반전** : 소멸꺾에 이어 돌파꺾이 나타나면서 차트상에 섬과 같은 모습이 연출하는 반전패턴 ★

### □ 보조지표 ★★★★★

13. **OBV(On Balance Volume)** : 주가가 뚜렷한 등락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거래량 동향에 의하여 향후 주가의 방향을 예측

#### ● 분석방법



- \* U마크(매입신호) : OBV선의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높게 나타날 때
- \* D마크(매도신호) : OBV선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낮게 나타날 때

#### ● 시장판단 ★

- \* 주가↓ ➡ OBV선 ↑ : 강세장 예상
- \* 주가↑ ➡ OBV선 ↓ : 약세장 예상

14. **VR(Volume Ratio : OBV의 누적차수)** : 바닥권 판단에 유용 ★★

70% 이하 침체	70 ~ 150% 보통	450% 이상 과열
--------------	-----------------	---------------

15. **등락주선(ADL : Advance Decline Line)** = 상승종목수 - 하락종목수

- 시장의 내부세력을 측정
- 종합주가지수에 관계없이 ADL이 상승하면 상승장이고 하락하면 하락장이다.

종합주가지수	ADL	경기상황
↓	↑	상승장
↑	↑	강력한 상승장
↓	↓	강력한 하락장
↑	↓	하락장

16. **등락비율(ADR : Advance Decline Ratio)** : ADL의 보조지표(ADL의 보완)

70 ~ 75% 바닥권(매수)	75 ~ 120% 보통	120 ~ 125% 과열(매도)
---------------------	-----------------	----------------------

17. **투자심리선(PL : Pshyological Line)** ★

$$PL(\%) = \frac{\text{10일 동안 주가상승일수}}{0}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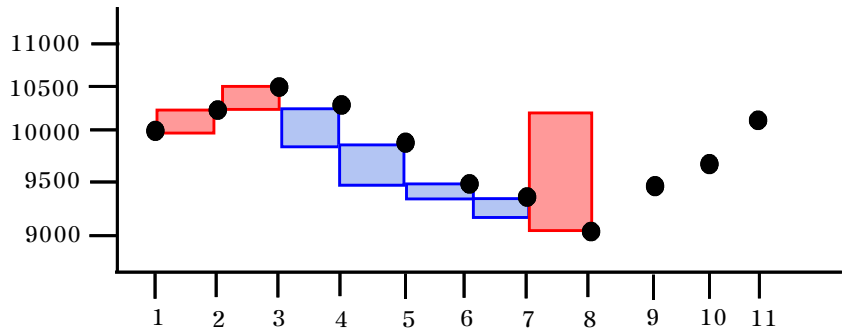
25% 이하 침체(매수)	25 ~ 75% 중립지대	75% 이상 과열(매도)
------------------	------------------	------------------

18. **삼선전환도** ★★

일자	주가(원)	표시도형	도표
----	-------	------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1	10,000	-
2	10,300	□
3	10,500	□
4	10,400	x
5	9,900	■
6	9,400	■
7	9,300	■
8	9,100	■
9	9,500	x
10	9,700	x
11	10,100	□



● 의미

- \* 상승선 3개에 해당하는 주가하락 시 하락이라 인식하여 매도
- \* 하락선 3개에 해당하는 주가상승 시 상승이라 인식하여 매수

● 특징

- \* 시간의 흐름이나 사소한 주가변동의 움직임을 무시한다.
- \* 주가의 새로운 고점이나 저점을 형성할 때만 그린다.
- \* 장세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전환시점을 포착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 한계점

- \* 단기간 주가등락일 경우 부적합하다.
- \*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부적합하다.
- \* 전환신호가 길게 나타날 때는 다음의 전환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19. P&F차트 : 점수도표 ★★

일자	주가(원)	점수도	도표											
			11,000	10,900	10,600	10,300	10,000	9,700	9,300	9,100				
1	10,100	x												
2	10,400	x												
3	10,800	x												
4	10,600	-												
5	10,200	-												
6	9,700	OOO												
7	10,300	-												
8	10,500	-												
9	10,700	xxx												
10	11,200	xx												
11	10,600	-												

X = 상승, O = 하락

● 특성

- \* 시계열 무시
- \* 목표치 계산이 활용
- \* 좁은지면에 장기적 기록이 가능

● 한계 : 신호가 느리므로 매수신호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20. 역시계곡선 : 주가와 거래량의 이동평균치를 매일의 교점으로 연결한 곡선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21. 엔빌로프(envelope) : 이동평균선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하여 추세의 움직임을 예측

● 투자전략

- \* 지지선 부근(아래쪽 곡선) : 매입
- \* 저항선 부근(윗쪽 곡선) : 매도

22. 볼린저 밴드(bollinger band) : 이동평균선에서 표준편차 이용

● 투자전략

- \* 매수 : 하한선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
- \* 매도 : 상한선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

23. RSI(Relative Strength Index) ★★

$$RSI = \frac{14\text{일간 상승폭 합계}}{4\text{일간 상승폭 합계} + 14\text{일간 하락폭 합계}} \times 100$$

● 매매판단

25% 이하	25 ~ 75%	75% 이상
침체(매수)	보통	과열(매도)

24. MAO(Moving Averages Oscillator : 이동평균선 오실레이터) = 단기이동평균선 값 - 장기이동평균선 값

비교	오실레이터 값	경기상황
단기이동평균 > 장기이동평균	+	상승추세
단기이동평균 < 장기이동평균	-	하락추세
단기이동평균 = 장기이동평균	0	-

25. CCI(Commodity Channel Index) = 당일평균주가 - 이동평균주가

● 매매판단 : 기준값 = 0

- \* 매수시점(강세신호) : 0선 위로 상향 돌파 시
- \* 매도시점(약세신호) : 0선 아래로 하향 돌파 시

26. 이큐-볼륨차트(Equi-Volume Chart) ★★

- 거래량(가로축)과 주가(세로축)를 기준으로 판단
- 고가, 저가, 거래량을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내어 연결한 상자모형의 차트

키다리형	정사각형	뚱보형
매수 또는 매도세력 중 한쪽이 강할 경우	매수세력 = 매도세력	매도세력 > 매수세력 (장세 하락)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27. 스토캐스틱 : %K, %D

● **의의** : 과거의 경험적 결과를 기초로 함

- \* 가격상승추세 ➡ 매일의 증가가 최근의 가격변동폭 중 최고치 부근에서 형성
- \* 가격하락추세 ➡ 매일의 증가가 최근의 가격변동폭 중 최저치 부근에서 형성

● **투자전략** : %K선 값의 해석

0	20 ~ 30 이하	70 ~ 80 이상	100
최저수준	하락추세	상승추세	최고수준

### 28. 스윙차트 : 등락폭 차트 ★★

● **의의**

- \* 시장가격의 등락을 직선의 굴절로 표시
- \*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시장가격이 움직이는 방향만 중시

● **특징** : 작성이 쉽다.

※ **시간의 개념을 무시한 기술적 지표** : 삼선전환도, P&F차트(점수도표), 스윙차트 ★★

## 제2과목 증권시장

### 제1장 유가증권시장

#### □ 주식발행시장

1. 발행시장 : 주식, 채권 등의 증권발행을 통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1차적 시장)

2. 발행방법 형태에 따른 분류

● 청약권유자 수에 따른 분류 : 공모발행, 사모발행 ★

#### \* 공모발행

- ▶ 불특정 다수(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개적으로 모집 및 매출
- ▶ 대규모 자금조달 시 이용, 일반적으로 간접발행으로 이루어짐

✓ 모집 :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 매출 :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밖(장외시장)에서 취득의 청약을 권유

#### \* 사모발행

- ▶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
- ▶ 일반적으로 직접발행으로 이루어짐

● 발행 방법에 따른 구분 : 직접발행, 간접발행

\* 직접발행 : 발행위험이 작은 사모에 이용(비교적 사무가 간단하다.), 국공채 발행에 이용

\* 간접발행 : 발행기관에 발행사무를 위탁, 회사채 발행에 이용

#### ○ 간접발행의 경우 발행위험 부담 ★

✓ 모집주선(위탁모집) : 발행사무를 발행기관에 위탁(발행회사가 위험부담을 한다.)

✓ 잔액인수 : 발행기관에 위탁한 후 모집부족액이 발행하였을 경우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발행방식(발행기관이 위험부담을 한다.)

✓ 총액인수 : 인수기관이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 대부분 총액인수 이용(발행기관이 위험부담을 한다.)

3. 주권 액면금액 단위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4. 신규상장의 종류 : 공모상장, 직상장

#### ● 공모상장

▶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상장하는 방식

▶ 절차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과 ⇨ 주식분산(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 자금조달 ⇨ 상장

#### ● 직상장

▶ 상장예비심사 후, 주권을 바로상장(주식분산 생략) : 분산요건을 이미 갖춘 기업(코스닥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시 허용)

5. 주권상장법인의 혜택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내용	상법상	증권상장법인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4	<b>발행주식 총수 대비 1/2</b>
주주총회 소집절차	개별통보	소액주주(1% 미만) 개별통보 생략가능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주총 특별결의 + 법원의 인가	주총 특별결의
분기배당	연 1회 중간배당	분기배당 (3월, 6월, 9월) <b>금전(현금)으로만 배당</b>
<b>자기주식 취득</b>	금지	<b>가능</b>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임직원에게 15% 부여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 : 10%)	장내양도 및 대주주 이외 : 비과세
		장외양도 및 대주주 : 과세 ※ 대주주: 3%이상 주주 또는 사가총액 100억 이상 주주
증권거래세		장내양도
		장외양도

### 6. 상장의 원칙

- 주권의 종목별 상장허용(보통주, 우선주 허용) : 종목별 일부신청만 상장 X(외국 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허용)

### 7. 상장준비

- 외부감사인 지정
-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 정관정비
- 명의개서 대행계약

### 8. 상장과정 ★★★

- ① **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 거래소 제출**
- ② **증권신고서 : 금융위 제출**
  - ▶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 발생 : 청약과 납입 가능
  - ▶ **발행가액의 결정 : 자율적 결정(인수회사와 발행회사 협의)**
  - ▶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전이라도 투자권유 가능**
- ③ 투자설명서 제출 : 금융위 제출
- ④ 청약 및 납입
- ⑤ 증권발행실적 : 금융위에 보고
- ⑥ 주권의 발행 및 교부
- ⑦ **증권신규상장신청서 : 거래소 제출**
- ⑧ 상장승인 및 매매개시

### 9. 신규상장 심사요건(코스닥 시장 비교)★★★

요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일반기업	벤처기업
경과연수	3년 이상	3년 이상	-
기업규모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상장예정주식 총수	100만주 이상	-	-
매출액	평균 200억 원 이상 최근사업연도 3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소액주주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감사의견	3년간 적정	최근 적정	
최대주주변동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 동안 변동이 없을 것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건설업영위 법인 적용 특례
- \*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
- \* 10년 이상 계속 영위(코스닥시장 : 5년 이상)
- \*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 원 이상(코스닥시장 : 300억 이상)

### 10. 증자 : 유상증자, 무상증자

- 유상증자 ★★
- \* **주주배정방식** : 이사회 결의
  - ▶ 기존주주에게 신주배정, 일반적 증자방식
  - ▶ 일반공모에 비해 발행비용이 적고 인수기관의 역할은 발행사무에 국한한다.(모집위험은 발행회사가 부담)
- \* **주주우선공모방식** :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 후 청약 미달 분은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이사회 결의)
- \* 제3자 배정(연고자 배정)방식 : 특정 제3자에게 부여(정관에 정함,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일반공모방식 : 일반인에게 공모(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 \* 직접공모 :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주를 공모
  
- \*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구분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공모
기산일	<b>발행가격 자율로 결정</b>	청약일 전 제5거래일	청약일 전 제5거래일
할인율	-	10% 이내	30% 이내

- 무상증자 : 이사회결의 or 주주총회 결의
- \* 자본잉여금 전부, 법정준비금 자본전입 ⇨ 증가된 자본금만큼 신주를 발행 ⇨ 구주주에게 배정, 교부
- \* 자본구조의 변경 목적(자금조달 X)

### 11. 주식배당 : 주권상장법인 이익배당 총액 가능(상법상 이익배당총액의 1/2이내)

### 12.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기간

- 공모 : 발행 후 1개월 경과 후
- 사모 : 발행 후 1년 경과 후

### □ 유가증권시장

### 13. 증권시장의 구분

- 발행시장 :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1차시장, 발행자가 직접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시장(장기금융시장)
- 유통시장 : 유동성을 높여주는 2차 시장

### 14.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 구분

✓ 금융상품(투자성 분류) - 금융투자상품 -(원본초과손실 분류)- 증권 / 파생상품  
- 비금융투자상품

### 15. 증권의 구분

- 채무증권 : 지급청구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 권리 증권(ELS, ELW)
- 투자계약증권 :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증권
- 증권예탁증권 : 증권예탁을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외의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권

### 16. 한국거래소의 주요업무 : 법정 자율규제기관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
-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품목의 **상장**에 관한 업무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
-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 17. 상장

#### ● 주권의 상장 구분

- \* 신규상장 : 비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공모상장, 직상장)
  - ▶ 공모상장 : 상장예비심사 통과 ➡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
  - ▶ 직상장 : (주식발행요건을 충족한 기업) 상장예비심사 통과 ➡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
- \* 신주상장 : 상장법인이 주권을 새로 발행하여 상장
- \* 변경상장 : 주식 액면금액 등을 변경한 후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
- \* 재상장 :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다시 상장**
  - ▶ 상장 폐지된 주권의 발행인
  - ▶ 주권상장법인 간 분할·분할합병
  - ▶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 법인 X)

#### ● 상장 종류

- \*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 :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 주식을 근거로 국내예탁기관(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식예탁서를 상장(**상장신청인 = 원 주식을 발행한 외국법인**)
- \*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 \* 채무증권(채권) 상장
- \* 수익증권 상장
- \*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ing Fund) 상장
- \*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

#### ● 상장폐지 ★★★

- \* 유형 : **신청폐지, 직권폐지**
  - ▶ 신청폐지 : 주권상장법인이 신청(거래소는 이를 거부가능하다.)
  - ▶ 직권폐지 : 거래소의 직권으로 폐지
- \* 정리매매기간 : 7일(가격제한폭 적용 배제, 지정가 호가 적용)
- \* 기준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항목	관리종목 지정기준	상장폐지기준
사업보고서 미제출	결산기 후 90일 이내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기준+10일 이내 미제출
<b>감사의견</b>	<b>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b>	<b>부적정·의견거절</b>
자본잠식	<b>자본금의 50% 이상 잠식</b>	관리종목 지정기준+2년 지속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
주식분포 미달	<b>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b>	관리종목 지정기준+2년 지속
	소액주주 소유주식비율 유동주식수의 10% 미달	관리종목 지정기준+2년 지속
거래량 미달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관리종목 지정기준+1회추가
공시의무 위반	고의적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	일정 이상 벌점 누적 시
<b>매출액 미달</b>	<b>50억 원 미만</b>	<b>관리종목 지정기준+1회추가</b>
<b>주가수준 미달</b>	<b>액면가액의 20% 미만 30일 지속</b>	관리종목 지정기준+90일간동안 하단 요건 충족 X
		액면가의 20% 이상 10일 이상 지속 액면가의 20% 이상 일수 30일 이상
<b>시가총액 미달</b>	<b>50억 원 미만 상태가 30일간 지속</b>	관리종목 지정기준+90일간동안 하단 요건 충족 X
		시가총액 50억 이상 10일 이상 지속 시가총액 50억 이상 일수 30일 이상
최종부도	-	상장폐지(은행거래 정지)

### 18. 공시

#### ● 자본시장법상 공시

\* 발행시장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금융위 제출)

\* 유통시장 :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90일 이내), 분기·반기보고서(45일 이내)** ➡ 금융위, 거래소 제출

▶ 수시공시 : 사유발생 당일 거래소에 신고

▶ 공정공시 : 정보 불균형 해소(적용 제외 :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한 정보제공,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조회공시 : 공시요구시점 오전일 경우 오후(6시)까지 공시,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

● 공시책임 : 공시책임자(1인 지정 의무), 공시담당자(2인 이상 의무, 코스닥기업 : 1인 이상 의무)

● 불성실공시의 거래소 조치 :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19. 매매계좌의 설정 : 약정서 양식은 금융투자회사 자율화(거래소 통보)

20. 수탁 거부 : 주문표에 거부이유를 표시

21. 고객 주문정보의 이용금지(front running 금지)

22. 위탁증거금과 위탁수수료 징수 비교

구분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
<b>징수율</b>		<b>자율적 결정</b>
징수율 및 징수방법 변경 시	시행일로부터 5거래일 이내	거래소 보고 및 사전 공표
증거금	현금, 대용증권	

23. **시장집중의무** :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매하도록 의무화

24. 매매거래시간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구분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07:30~08:30	07:30~08:30
<b>정규시장</b>		<b>08:00~15:00</b>	<b>09:00~15:00</b>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시간외 증가매매	15:00~15:30	15:10~15:30
	시간외 대량매매	15:00~18:00	15:10~18:00
	시간외 바스켓 매매		
	시간외 단일가 매매	-	15:30~18:00

### 25. 매매거래 종류 ★

- 당일결제거래 : 장내 일반채권매매
- 익일결제거래 : 국채딜러 간 채권매매
- 보통거래(3일째 되는 날 결제) : 주권매매(예외 : 자기주식매매)

### 26. 호가

#### ● 호가의 종류 ★★

- \* 지정가 호가 : 직접 주문가격 지정
- \* 시장가 호가 : 시장에서 체결되는 가격으로 주문매수
- \* 조건부 지정가 호가 : 주문시 지정가 호가로 지정하고 미체결분에 대해서 장 종료 단일가 매매시(14:50) 시장가 호가로 자동 전환되는 호가
- \* 최유리지정가호가 : 반대방향 주문
  - ▶ 매수 : 최저 매도호가로 주문
  - ▶ 매도 : 최고 매수호가로 주문
- \* 최우선지정가호가 : 동일방향 주문
  - ▶ 매수 : 최고 매수호가로 주문
  - ▶ 매도 : 최저 매도호가로 주문
- 지정가 호가만 체결되는 증권의 종류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및 채무증권, ELW(이외 증권은 모든 호가 가능)
- Side Car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 일시정지제도 ★★
- \* 선물거래종목 중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하여 1분간 지속(5분간 매매정지)
- \* 발동시간 : 09:05~14:20(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이를 적용 X: 1일 1회 발동)
- 호가 가격단위 (※ 빨간색 기준가 1,000원) ★★

구분	유가증권시장(7단계)	코스닥시장(5단계)
1,000원 미만		1원
1,000원~5,000원		5원
5,000원~10,000원		10원
10,000원~50,000원		50원
50,000원~100,000원		100원
100,000원~500,000원	500원	1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ELW는 ELF와 동일한 5원의 단일호가단위 사용

### 27. 가격제한폭 : ±15%(예외 :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ELW, 채권)

### 28. 매매수량단위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구분	내용
주권, 수익증권, ELW	✓ 10주(5만 원 이상 : 1주) ✓ 코스닥시장 : 1주
ETF	1주
소액채권	액면 1,000원
채권 (소액채권 제외)	액면 10만원
국채딜러 간 매매거래	10억 원

### 29. 매매체결우선 원칙 ★★★

- 가격우선의 원칙 : **시장가호가**는 지정가 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 ★
- 시간우선의 원칙(단일가 매매 동시호가 적용시 배제) ★
-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위탁매매**가 자기매매에 우선
- **수량우선**의 원칙

### 30. 개별경쟁매매의 구분과 거래시간 : 단일가 개별경쟁매매, 복수가 개별경쟁매매 ★

- 단일가 개별경쟁매매

구분	내용	거래시간
단일가매매	장개시전 시가결정 시	08:00~09:00
	장 종료 전	14:50~15:00
	Side Car, Circuit Break 이후 최초가격 결정 시	10분간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 이후 최초가격 결정 시	
	<b>시간외 단일가 매매</b>	<b>15:30~18:00</b>
동시호가	시가 결정 시	15:30~18:00
	시장 임시정지, 매매거래 중단 후 최초가격 결정 시	10분간
	신규상장종목 최초가격 결정 시	08:00~09:00

- 복수가 개별경쟁매매 : 장내거래시간 09:00~14:50

### 31. 시간외 매매의 구분 ★

구분	시간외 증가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외 바스켓 매매	장중 대량·바스켓 매매	시간외 단일가 매매
매매시간	07:30~08:30 15:10~15:30	07:30~08:30 15:10~18:30		09:00~15:00	15:30~18:00
집행가격	전일종가(장개시전) 당일종가(장종료 후)	당일 상·하한가 이내			당일종가 5% 이내 (상·하한가 이내)
매매수량	-	매매수량단위 500배 이상 수량x가격 1억 원 이상	5종목이상 10억 원	시간외 요건과 동일	1주
매매체결	시간우선원칙	상대매매체결			-

### 32.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 매수 주문가격 : (장 개시 전) 전일종가기준 +5% 가격 범위 이내
- 매도 주문가격 : (장 개시 전) 전일종가보다 2호가 낮은 가격
- 일일 주문수량 : 취득예정수량의 10%, 최근 1개월간 일일평균거래량의 25%(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 제출(제출 후 3일 경과 후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해야 한다.)
- 정규시장 종료 30분 전 이후(14:30) 신규주문 및 정정주문 불가

### 33.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 결정

- 장개시전 호가접수시간(08:00~09:00)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최저호가가격(평가가격 90%)~최고호가가격(평가가격 200%) 이내 (우선주 : 평가가격 50%~200%)

### 34. 한국의 매매거래의 결제방식 : **실물결제방식, 차감결제방식, 집중결제방식**

- 실물결제방식 : 증권과 대금을 실질적으로 수수
- 차감결제방식 : 전액이나 잔량만 결제
- 집중결제방식 : 결제기구(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결제

### 35. 시장관리제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지급 거래집중종목</li> <li>✓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li> <li>✓ 증가 급변종목</li> </ul>	<p>최근 5일간 주가상승율 75% 이상 2일 지속</p>	<p>투자경고종목 지정후 10일 이내 재지정</p>	<p>※상장폐지 참고</p>
<p>거래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거래종목 제외</li> <li>✓ 위탁증거금 100% 강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거래종목 제외</li> <li>✓ 위탁증거금 100% 강제</li> <li>✓ 대용증권 이용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거래종목 제외</li> <li>✓ 대용증권 이용제한</li> </ul>

- Circuit Breakers : 시장 전체 매매중단제도 ★★★

\* KOSPI가 전일증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20분간 중단)

\* **1일 1회 발동(장 종료 40분전 발동 X)** : Side Car와 동일

- **대용증권 및 사정비율 : 거래소 결정**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전일 조치 ★**

- **배당락 :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 조치 ★**

### 36. 거래소는 조정효력이 있다(민법상 화해계약)

## 제2장 코스닥시장

#### □ 개론

1. 코스닥시장 : 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과 별도의 시장 ★**

2. 코스닥시장의 특징

-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 : 중소기업, 벤처기업
- **주가변동이 높아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역할과 책임 중시**

#### □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3. 코스닥상장법인의 혜택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내용	상법상	증권상장법인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4	발행주식 총수 대비 1/2
신종사채 발행	일반회사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사채발행한도	순자산액의 4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분에 대해)	제한 없음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 : 10%)	장내양도 및 대주주 이외 : 비과세
		장외양도 및 대주주 : 과세 ※ 대주주: 5%이상 주주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 주주 유가증권시장 ※ 대주주: 3%이상 주주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주
배당소득세		소액주주 : 분리과세
		대주주 : 종합과세
증권거래세		장내양도
		장외양도

#### 4. 상장의 종류 : 신규상장, 변경상장, 재상장(유가증권시장과 동일)

- 신규상장 : 비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공모상장, 직상장)
  - ▶ 공모상장 : 상장예비심사 통과 ➡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
  - ▶ 직상장 : (주식발행요건을 충족한 기업) **상장예비심사 통과** ➡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
- 변경상장 : 주식 액면금액 등을 변경한 후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
- 재상장 :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다시 상장
  - ▶ 상장 폐지된 주권의 발행인
  - ▶ 증권상장법인 간 분할·분할합병
  - ▶ 증권상장법인 간 합병(증권상장법인과 비상장 법인 X)

#### 5. 신규상장 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비교)★★★

요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일반기업	벤처기업
경과연수	3년 이상	3년 이상	-
기업규모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주식분산요건	소액주주 1,000명 이상	✓ 직상장 : 소액주주 500명 이상 25%이상 보유 (우리사주 조합원 제외) ✓ 분산요건 예외 : 대규모기업 10%이상	
감사의견	3년간 적정	최근 적정	
최대주주변동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 동안 변동이 없을 것		
상근감사	1천억 이상 : 1인 이상		
사외이사	(1천억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		
매출액	평균 200억 원 이상 최근사업연도 3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	최근 25억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익율	3년 합계 10%	10% 이상	5% 이상
소액주주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상장예정주식 총수	100만주 이상	-	

※ 코스닥 시장 일반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은 상장요건이 보다 완화

#### ● 건설업영위 법인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
- \* 5년 이상 계속 영위(유가증권시장 : 10년 이상)
- \* 시공능력평가액이 300억 원 이상(유가증권시장 : 500억 이상)

### ● MF(Mutual Fund) : 투자회사

- \* 자본금 : 4억 원 이상
- \* 모집·매출실적

### ● 상장지수투자회사(주식형 ETF)

- \* 자본금 : 100억 원 이상
- \* 발행주식수 : 10만 주 이상
- \* 지정판매사 : 2사 이상

###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 자본금 : 100억 원
- \* 주주 수 : 100명 이상

## 6. 상장절차 ★★

- ①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 거래소 제출
- ② 증권신고서 : 금융위원회 제출
  - ▶ 발행가액의 결정 : 자율적 결정(인수회사와 발행회사 협의)
  - ▶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전이라도 투자권유 가능
- ③ 증권정정신고서
- ④ 청약 : 효력발생 후 2일간 실시
- ⑤ 배정 및 환불
- ⑥ 납입
- ⑦ 본 상장 신청 : 거래소 제출
- ⑧ 상장 승인 및 매매개시(상장일로부터 실시)

## □ 코스닥시장 매매제도

### 7. 코스닥시장 소속부

- 구분 :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투자회사부, 외국기업부 ★
- 소속부 변경 : 소속부 증빙서류 제출일의 익일

### 8. 거래비용

- 위탁증거금 : 금융투자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현금, 대용증권 가능 : 거래소 지정) ★
- 위탁수수료 : 금융투자회사 자율적으로 결정(매도 및 매수 시 징수) ★
- 증권거래세 : 매도 시에만 0.3%적용(손해시에도 징구, 액면가 이하 매도한 경우 징구) ★

### 9. 매매제도

- 호가조건
- \* IOC(Immediate Or Cancel : 즉시 집행 후 잔량 취소) :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에 대해서 체결 후 미 잔량은 취소
- \* FOK(Fill Or Kill : 즉시 전량 집행) : 수량 충족 시 체결, 수량 미 충족 시 취소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10. 호가 가격단위 (유가증권시장 비교 : ※ 빨간색 기준가 1,000원) ★★

구분	유가증권시장(7단계)	코스닥시장(5단계)
1,000원 미만		1원
1,000원~5,000원		5원
5,000원~10,000원		10원
10,000원~50,000원		50원
50,000원~100,000원		100원
100,000원~500,000원	500원	1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ELW는 ELF와 동일한 5원의 단일호가단위 사용

### 11. 매매체결우선 원칙 ★★★

- 가격우선의 원칙 : 시장가호가는 지정가 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 ★
- 시간우선의 원칙 (단일가 매매 동시호가 적용시 배제) ★
-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위탁매매가 자기매매에 우선
- 수량우선의 원칙

### 12. 개별경쟁매매의 구분과 거래시간 : 단일가 개별경쟁매매, 복수가 개별경쟁매매(유가증권시장과 동일) ★

- 단일가 개별경쟁매매

구분	내용	거래시간
단일가매매	장개시전 시가결정 시	08:00~09:00
	장 종료 전	14:50~15:00
	Side Car, Circuit Break 이후 최초가격 결정 시	10분간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 이후 최초가격 결정 시	
	시간외 단일가 매매	15:30~18:00
상장폐지종목 정리 매매, 관리종목	30분 단위	

- 복수가 개별경쟁매매 : 장내거래시간 09:00~14:50

### 13. 시간외 매매 구분 ★

구분	시간외 증가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장중 대량매매	시간외 단일가매매
매매시간	07:30~08:30 15:10~15:30	07:30~08:30 15:10~18:30	09:00~15:00	15:30~18:00
집행가격	전일종가(장개시전) 당일종가(장종료 후)	당일 상·하한가 이내	(호가제출시점)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	당일종가 ±5% 이내 (상·하한가 이내)
매매수량	-	수량×가격 1억 원	시간외 요건과 동일	-

### 14.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 결정

- 장개시전 호가접수시간(08:00~09:00)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
- 최저호가가격(평가가격 90%)~최고호가가격(평가가격 200%) 이내 (우선주 : 평가가격 50%~200%)
- 투자회사(MF), ETF 경우 : 평가가격의 ±15% 이내

### 15. Circuit Breakers : 시장 전체 매매중단제도 ★★★

- \*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20분간 중단)
- \* 1일 1회 발동(장 종료 40분전 발동 X) : Side Car와 동일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16. Side Car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 일시정지제도 ★★

- \* 선물거래종목 중 기준가격 대비 6% 이상(유가증권시장 : 5%)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5분간 매매정지)
- \* 발동시간 : 09:05~14:20(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이를 적용 X: 1일 1회 발동)

### 17. 권리락과 배당락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전일 조치 ★
- 배당락 : 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전 매매 분부터 조치 ★

###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관리 및 폐지제도

### 18. 공시의 분류

- 정기공시 :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 \* 사업보고서 : 90일 이내 ★
- \* 반기·분기보고서 : 24일 이내 ★
- \* 기업집단결합제무제표 : 6개월 이내
- 특수공시 :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 합병, 주식매수선택권, 경영참고사항 등(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 수시공시 : 중요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
- \* 사유발생 당일 오후 6시까지 신고 : 거래소 신고
- \* 예외 사유의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
- 조회공시 : 거래소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
- \* 오전에 요구 시 오후까지, 오후에 요구 시 익일 오전까지 공시
- 공정공시 : 기업의 중요정보를 특정집단에 제공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도 알 수 있도록 즉시 공시
- \* 정보제공 10분전까지 신고 ★
- \* 예측 정보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인정
- 기타 공시
- \* 공개매수 관련 자료
- \* 안정조작 시장조성신고서
-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 임원 및 주요주주 주식상황보고 : 5일 이내
-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rule)

### 19.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 비교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항목	관리종목 지정기준	상장폐지기준
자본잠식율	<b>50% 이상</b>	관리종목 지정기준+2회 이상
자기자본	<b>10억 원 미만</b>	전액 잠식
매출액	<b>최근사업년도 30억 원 미만</b>	관리종목 지정기준+2회 이상
시가총액	<b>40억 미만(30일 이상 지속)</b>	관리종목 지정기준+90일 이상
불성실공시	누계별점 15점 이상(2년간)	허위기재 또는 정정으로 상장 부적합 판정시
재무제표 감사의견	(최근 반기 재무제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최근 사업 연도 재무제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b>한정의견</b>
거래실적	부진	관리종목 지정기준+2분기 계속
주식분산기준	✓ 직상장 : 소액주주 500명 미만 <b>25% 미만 보유</b> (우리사주 조합원 제외) ✓ 분산요건 예외 : 대규모기업 10% 미만	관리종목 지정기준+1년 이내 해소 불가
공시	정기공시 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법정기한 이내 제출 X	관리종목 지정기준+10일 이내 제출 X
기타	-	✓ 영업정지, 영업양도 ✓ 타법인에 피흡수 ✓ 유가증권시장 상장

● 관리종목법인의 불이익 : 신용거래 불가능, 대응증권 불가능, 증거금 100% 요구(일부 법인의 경우) ★

● 상장폐지 분류 : 당연폐지, 신청폐지

\* 당연폐지 :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권상장법인과 합병 경우 정리매매기간 X

\* 신청폐지 : 거래소 거부가능 ★

● 상장폐지 이의신청제도 :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거래소는 15일 이내 통지)

● 상장폐지 :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 부여 ★

\* 정리매매기간 : 7일 이내

\* 거래시간 : 09:00~15:00(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지정가호가 체결방식 : 1일 13회)

\* 가격제한폭 : X

### 20. 투자경고종목

● 최근 5일 : 주가상승율 75% 이상, 2일간 지속(5일간 주가상승율의 산업 상승률의 6배 이상, 20일 중 최고가)

● 최근 20일

\* 주가상승율 150% 이상, 2일간 지속(최근 20일 중 최고가)

\* 거래집중종목 5회 이상 지정, 주가 100% 이상 상승(2일 연속, 최근 20일 중 최고가)

### 21. 보호예수제도 :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 ★★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제3자 배정인과 최대주주 : 1년간(상장 후 6월 경과 시 매 1월마다 5% 매각 가능)

● 사모유상증자 한도초과주주 : 1년간

●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가 : 1월간

※ 보충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비교 〉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호가종류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호가단위	(7단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단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가격제한폭	15%	
거래단위	10주(5만 원 이상 : 1주)	1주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의 0.15% (+농특세 0.15%)	양도가액의 0.3%
대용증권 사정비율	전일종가 70%(상위50종목 : 80%)	전일종가 70%
Circuit Breakers	KOSPI 10% 하락 1분간 지속(20분간 중단) (1일 1회 : 장종료 40분 전 불가)	
Side Car	선물가격 ±5% 1분간 지속(5분간 매매중단) (1일 1회 : 장종료 40분 전 불가)	선물가격 6% 이상 및 선물가격대상지수 3% 변동 시 1분 지속(5분간 매매중단)
시간외 대량매매	당일 상·하한가 범위 내 매매수량단위 500배 또는 1억원 이상	당일 상·하한가 범위 내 1억 원인 경우
우리사주 배정 의무	20%	자율

### 제3장 프리보드시장

#### □ 개론

- 프리보드시장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를 위해 운영되는 **장외시장**
- 시장구조 :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테크노파크기업부  
\* 소속부 변경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 다음날 지정법인의 소속부 변경 가능

#### □ 프리보드 지정

#### 3. 지정의 구분

신규지정	프리보드시장에 최초로 지정(상장의 의미)
변경지정(추가지정)	기존 지정내용을 변경하여 지정
재지정	지정해제 된 후 1년 이후 신규지정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정(1년 이내 재지정 불가)

#### 4. 신규지정 절차

- ① 외부감사
- ② 정관정비
- ③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및 통일규격증권
- ④ 호가중개시스템상의 소액매출신고서류 제출
- ⑤ 신규지정 신청
- ⑥ 신규지정 승인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정 결정
- ⑦ 매매개시 : 승인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에 매매거래를 개시

5. 매매거래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6. 호가가격단위 : 6단계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구분	프리보드시장
5,000원 미만	5원
5,000원~10,000원	10원
10,000원~50,000원	50원
50,000원~100,000원	100원
100,000원~500,000원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지정가호가만 가능 : 장 개시 전 및 종가 결정시 동시호가와 시간외매매제도 X

7.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의 0.3을 곱하여 산출금액

8. 매매체결원칙 : 가격일치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

9. 매매거래의 결제 : 매매일 포함한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

10. 거래비용 및 세금

- 위탁수수료 : 금융투자회사 자율로 결정
- 증권거래세 : 0.5%(매매결제 시 원천징수) ★

● 양도소득세 ★

\*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 10%

\* 대기업 주식 양도 시 : 20%(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주식 : 30%)

□ 프리보드 매매제도

11. 공시의 분류 :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 공정공시제도 X

● 정기공시 : 금융위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 사업보고서 : 90일 이내 ★

\* 반기·분기보고서 : 24일 이내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 중요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금융위원회 : 주요사항보고서(사유발생 다음 날 까지)

● 조회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1일 이내 공시)

□ 지정법인 관리제도

1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 불성실공시 : 공시불이행, 공시변복, 허위공시

● 투자유의지정

항목	투자유의
월 거래량	지정주식 총 수의 0.05%미만 4개월 지속
불성실공시 지정	2년간 4회 이상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자본금	잠식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매매거래정지

항목	매매거래정지기간
정기공시 90일 이내 미제출	제출 다음날 ~ 제출일 까지
불성실공시 발생 시	1일 영업일
투자자보호 필요 인정	
프리보드 전체의 장애발생 우려 주권의 액면분할, 병합 등	사유해소시 까지

13. 지정해제(상장폐지) ★

항목	상장폐지기준
부실화된 기업	최종부도, 거래은행과 거래정지, 신규지정요건 충족 X
공시의무 X, 유동성저하	정기공시 제출기한(90일)이내 미제출 후 30일 이내 미제출 시
	불성실공시 2년동안 6회이상 월 거래량 지정주식총수의 0.05%미만 6개월 지속
조직변경, 경영방침 등 변경	피흡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영업 정지 및 양도, 해산사유 발생

14. 정리 매매 : 가격제한폭(±30%) 적용, 상대매매 ★

※ 보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 비교 ★★★

<증권시장 비교>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
운영주체	거래소(KRX)		금융투자협회
시장구분	장내시장		장외시장
시장구조	-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외국기업부 투자기업부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테크노파크기업부
매매방식	경쟁매매		상대매매
매매시간	정규시장시간, 시간외 시장시간		정규시장시간
매매체결원칙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호가수량단위	10주 (5만원 이상 : 1주)	1주	
호가가격단위	7단계	5단계	6단계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15%		기준가격 ±30%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
호가종류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 지정가호가 최우선 지정가호가		지정가호가
신용거래 대용증권	가능		불가능
증권거래세 관리제도	양도가액 0.15%	양도가액 0.3%	양도가액 0.5%
정리매매종목	관리종목 7영업일 이내 가격제한폭 미적용 단일가매매		투자유의종목 10영업일 이내 가격제한폭 적용 상대매매

## 제4장 채권시장

### □ 채권의 기초

#### 1. 채권의 본질

- 법적 제한 : 발행주체의 자격 및 발행여부
- 일정이자 지급하는 증권
- 원금상환기한이 정해짐
- 장기증권

#### 2. 채권관련 용어 ★

- 액면금액 : 권면금액, 만기 상환원금
- 표면이율 : 채권면에 기재된 이율(연 단위 지급이율)
- 발행일 : 채권의 신규창출 기준일
- 매출일 : 실제로 채권이 신규 창출된 날짜(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경우도 있다.)
- 만기 : 채권발행일 ~ 원금상환까지 기간
- 경과기간 : 채권발행일/매출일 ~ 매매일 까지 기간
- 잔존기간 : 매매일 ~ 만기일까지 기간
- 만기수익율 : (만기까지 보유 시)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 단가 : 만기수익율에 의해 결정된 채권매매가격

#### 3. 채권시장의 국민경제효과

- 장기자금조달
- 금리변동을 통해 경기예측 활용
- 통화정책 기준 활용
- 자산운용의 수단

#### 4. 채권의 분류

##### ●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

- \* 국채 : 국민주택 1·2·3종,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 \* 지방채 : 서울도시철도채권, 상수도공채, 지역개발채권
- \* 특수채

- ▶ 특별법인 : 토지개발채권, 전력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서울지하철공사채권
- ▶ 금융기관 :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 \* 회사채

##### ● 이자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 이표채 : 정기적으로 이자지급(3개월, 6개월)
- \* 무이표채 :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 ● 보증유무에 의한 분류 : 보증사채, 무보증사채(2개 이상의 기관에서 복수신용평가 의무)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분류 : 투자등급채권(AAA~BBB), 투기등급채권(BB~D)

##### ● 상환기간에 의한 분류 : 단기채(1년 이하), 중기채(1년~5년), 장기채(5년 초과)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이자금액 변동유무에 의한 분류
  - \* 확정금리부채권 (Straight bond)
  - \* 변동금리부채권 (Floating rate bond) ★
    - ▶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지급이 달라지는 채권
    - ▶ 지급금리 = 기준금리 (reference : LIBOR, CD 만기수익율) + 가산금리 (bp)
    - ▶ 금리하락시 : 채권발행자 유리 / 금리상승시 : 채권투자자 유리
  - \* 역 변동금리부채권 (inverse floater)
    - ▶ 시장금리의 변동과는 반대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채권
    - ▶ 지급금리 = 고정금리 - 기준금리
    - ▶ 금리하락시 : 채권투자자 유리 / 금리상승시 : 채권발행자 유리
  
- 원금지급형태에 의한 분류 : 만기일시상환채권, 액면분할상환채권
  
- 옵션첨부에 의한 채권분류
  - \* 옵션부사채 (BO : Bond with imbedded Option) : **알정조건 충족시 만기 전에 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옵션조건이 첨부된 채권 ★★**
    - ▶ 수의상환채권 (Callable bond)
      - ✓ 채권발행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는 옵션조항의 채권
      - ✓ 일반채권에 비해 표면금리가 높고 채권수익률이 높다.
      - ✓ 가치 : 일반채권 가치 - 콜옵션
    - ▶ 수의상환청구채권 (Puttable bond)
      - ✓ 채권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원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 가치 : 일반채권 가치 + 풋옵션
  
- 주식관련채권분류
  - \*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사채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채권 ★
    - ▶ 장·단점
      - ✓ 장점 : 자본조달비용 절감 (일반채권에 비해 표면금리가 낮다.), 재무구조 개선효과 (부채 → 자기자본)
      - ✓ 단점 : 경영권 지배영향
    - ▶ 전환가격과 전환주수
      - ✓ 전환가격 :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격
      - ✓ 전환주수 = 액면금액 / 전환가격
    - ▶ 패리티 (parity) =  $\frac{\text{주가}}{\text{전환가격}} \times 100\%$  (주가가 전환가격 대비 몇 %인지 나타내는 지표)
      - ✓ 패리티 가격 = 패리티 X 10,000원
    - ▶ 전환프리미엄 (괴리) = 전환사채 시장가격 - 전환가치 (패리티가격)
      - ✓ 괴리율 (%) =  $\frac{\text{전환사채 시장가격} - \text{패리티가격}}{\text{패리티가격}} \times 100$
    - ▶ 전환사채의 가치
      - ✓ 상한선 = 일반채권 가치 + 미래 주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시장가치
      - ✓ 하한선 = 일반채권 가치
  -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 신주발행 시 신주인수권리가 부여되는 사채
    - ▶ 신주인수권과 사채 분리거래가 가능 (신주인수권 권리청구 시 사채권 존속)
  - \* 이익참가부사채 (PB : Participating Bond)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 채권은 다른 상장주식으로 교환청구 가능한 사채**

▶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비교 ★

구분	교환사채 (EB)	전환사채 (CB)
발행회사 요건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b>비상장법인</b>
사채 권리	교환권	전환권
<b>대상 유가증권</b>	<b>타 상장유가증권</b>	<b>발행회사 증권</b>
권리행사 후 지위	타 회사 주주 지위 획득	발행회사 주주지위 획득

● 구조화된 채권분류 : 채권 + 파생상품 결합(채권의 원리금이 주식, 금리, 환율 등에 연동되어 수익결정)

\* 역금리변동부채권

\* Leveraged FRN : 기준금리에 일정승수를 감안하여 이자 지급

\* 양기준 금리변동부채권 (dual indexed FRN) : 두 개의 서로 다른 변동금리의 차이에 의해 결정

\* **디지털옵션 금리변동부채권** : 기준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 ➡ 높은 금리 지급 / 기준금리가 일정한 범위 밖 ➡ 낮은 금리 지급 ★

\* Flipper : 만기 전에 이자지급 구조(고정금리 ➡ 변동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가 변동되는 채권

● 단기 확정 이자부 채권관련 유가증권

\* 양도성정기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 : 은행이 할인발행(만기 : 30일, 3개월, 6개월)

\* 기업어음증권 (CP : Commercial Paper) : 기업이 단기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 표면이율 X(채권과의 차이점)

▶ 만기 91일물

▶ 2개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함

▶ 투자등급 : A1, A2, A3 / 투기적 등급 : B, C, D

● 기타 채권관련 증권

\* **자산유동화증권 (ABS : Asset Backed Security) : 기초자산을 표준화 하여 증권발행하고 이 현금흐름에 의해 상환하는 채권**

▶ 유동성이 낮고 현금흐름예측이 가능, 자산양도 가능, 동질성이 높은 자산을 대규모로 집합하여 구성

▶ 현금수취에 따른 구분 ★

✓ Pass-through Security(자동이전형, 지분형) : 지분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식형태로 발행

✓ Pay-through Bond(원리금 지급형, 채권형) : 현금흐름을 증권화하여 상환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을 발행

▶ 유동화 대상자산에 의한 구분

✓ Primary CBO : 신규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

✓ Secondary CBO : 기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

✓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

□ 채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5. 채권 발행기관

● 간사기관 : 인수단 구성, 증권발행관련 사무처리, 발행자에 대한 조언 및 사무절차 대행하는 기관

● 인수기관 : 유가증권을 발행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기관

● 청약기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대행해 주는 기관(청약만 대행 : 책임과 계산 X)

6. 채권발행방법 ★★

● 사모

\* 50인 미만 소수투자자 대상

\* 기관투자자 대부분, 공모채권보다 이자율 ↑, 만기가 짧다.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대부분의 회사채

● 공모

\* 직접모집

- ▶ 매출발행 : 발행조건을 미리정함 / 발행총액은 사후결정
- ▶ 공모입찰발행 : 발행조건 X / 총액을 미리 정한다.

✓ 복수가격경매방식(Conventional 방식) : 복수 낙찰가격 발생 ★

(Ex : A회사 100주 공모 시(발행 예정액 1,000원/1주) : ■ 낙찰가

응찰가격	수익율	채권 수	낙찰
990원	1%	50	O
980원	2%	40	O
970원	3%	30	10주 O (20주 X)
960원	4%	30	X
⋮	⋮	⋮	⋮

✓ 단일가격경매방식(Dutch 방식) : 단일 낙찰가격 발생

(Ex : A회사 100주 공모 시(발행 예정액 1,000원/1주) : ■ 낙찰가(최고수익율 응찰가격 동일 적용)

응찰가격	수익율	채권 수	낙찰
990원 (최저낙찰가 970원 적용)	1% (최고수익율 3% 적용)	50	O
980원 (최저낙찰가 970원 적용)	2% (최고수익율 3% 적용)	40	O
970원	3%	30	10주 O (20주 X)
960원	4%	30	X
⋮	⋮	⋮	⋮

✓ 차등가격낙찰방식 : 일정간격으로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로 최고낙찰수익률을 적용(복수 낙찰가격 발생)

\* 간접모집

- ▶ 모집주선(위탁모집) : 발행사무를 발행기관에 위탁(발행회사가 위험부담을 한다.)
- ▶ 잔액인수 : 발행기관에 위탁한 후 모집부족액이 발행하였을 경우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발행방식(발행기관이 위험부담을 한다.)
- ▶ 총액인수 : 인수기관이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 대부분 총액인수 이용(발행기관이 위험부담을 한다.)

7. 발행시장 현황 : 무보증사채 비중 증대, 발행만기기간의 장기화

8. 유통시장 분류

● 장내시장

\* 일반채권시장

- ▶ 상장채권, 거래소 유가증권시장거래(코스닥시장 X)
- ▶ 결제시한 : 당일 16:00 결제
- ▶ 가격제한폭 X
- ▶ 위탁수수료 : 증권회사 자율
- ▶ 호가 및 매매수량 액면 100,000원 단위

- \* 국채딜러간 경쟁매매시장(IDM : Inter-Dealer Market)
  - ▶ 호가수량단위 : 액면 10,000원 / 호가가격단위 1원
  - ▶ 매매수량단위 : 10억 원
  - ▶ 결제시한 : 익일결제

\* 소액채권시장 : 50억 미만 거래

- 장외시장 : 대고객 상대매매시장, IDM(Inter-Dealer Broker)시장
- \* 대상채권 : 상장채권 및 비상장채권 모두 가능 ★
- \* 거래장소 : 증권회사 영업소
- \* 결제방법 : 약정과 동시에 결제, 당일에 현물과 현금 수도
- \* 가격제한폭 X, 매매수량단위 X

9. 유통시장 현황 ★

- 장외거래 비중이 높다.
- 주로 기관투자자 참여한다.
- 국채중심으로 변화되어 국채수익율의 중요성 증대된다.

10. 채권관련 제도

- Repo(RP)거래(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유가증권을 매매함과 동시에 차후 일정가격으로 동일채권을 재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채권담보부 단기자금 대차거래)

- 채권 대차거래 : 채권을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 후 상환받는 거래

□ 채권투자분석

11. 채권가격 결정요인 : 채권수익률, 액면가격, 표면이자율, 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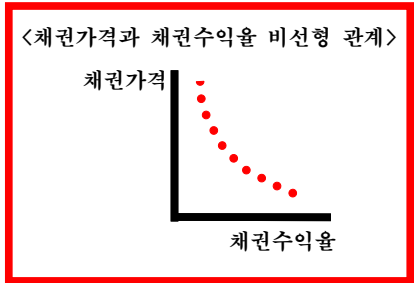
12. 채권가격 계산 ★

$$P(\text{채권가격}) = \frac{\text{(만기상환금액)}}{1+r(\text{만기수익율})} + \frac{d(\text{잔존기간})}{365} \times (1+r(\text{만기수익율}))^{(\text{기간:년})}$$

- 계산순서
  - ① 채권의 종류 파악 : 이표채, 무이표채, 할인채 등
  - ② 미래현금흐름을 추적
  - ③ 채권수익율과 잔존기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 계산

13. 채권가격정리(B. G. Malkiel) ★★★

- 제1정리 : 채권가격과 채권수익율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비선형관계)
- 제2정리 :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가격 변동폭이 커진다.(위험증대)
- 제3정리 :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폭이 커지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 제4정리 : 채권수익율 ↓ 인한 가격상승폭 > 채권수익율 ↑ 인한 가격하락폭 ★★
- 제5정리 : 표면이자율 ↓ ⇨ 채권가격 변동폭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투자전략과 연결 : 채권수익율 ↓ 예상 시(채권가격 ↑ 예상 시)
- \* 장기채 매입
- \* 표면이자율 낮은채권 매입
- \* 듀레이션(원금상환속도)을 길게 취한다.

### 14. 투자수익율의 종류 ★★

- **실효수익율** : 채권 원금, 표면이자 수익, 재투자 수익 등 고려하여 투자수익의 증가율을 나타내 주는 지표
- **만기수익율(유통수익율, 시장수익율)** : 단위기간별 현금흐름(원금+이자)에 현재가치의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 ★★
- \* 투자 후 만기까지 보유, 만기수익율로 재투자하는 것을 전제

○ 만기전 매도하거나 이표채의 경우

- ✓ 만기수익율 < 재투자수익율 : 만기수익율 < 실효수익율 < 재투자수익율
- ✓ 만기수익율 = 재투자수익율 : 만기수익율 = 실효수익율 = 재투자수익율
- ✓ 만기수익율 > 재투자수익율 : 만기수익율 > 실효수익율 > 재투자수익율

- 연평균수익율
- 발행수익율
- 세전수익율과 세후수익율

### □ 채권투자의 위험도와 수익성 측정

#### 15. 채권투자 위험

- 이자율변동위험 : 가격변동위험, 재투자위험
- 구매력위험(인플레이션위험)
- 채무불이행위험
- 유동성위험
- 수의상환위험
- 환율위험

### 16. Malkiel의 듀레이션 ★★★

$$\text{Duration} = \frac{\sum_{t=1}^n \text{기간별 현금흐름의 가치}}{\text{채권가격}} \quad t = \frac{\sum_{t=1}^n F_t \times t}{\sum_{t=1}^n (1+r)^t} \times \frac{1}{P}$$

- ✓ r : 채권의 만기수익율
- ✓ t : 현금흐름 발생기간
- ✓ CF<sub>t</sub> : 채권에서 발생하는 각 기의 현금흐름
- ✓ P : 채권가격

- ▶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자+원금)을 매기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현재가치한 합을 채권가격(투자금액)으로 나눈 것.
- ▶ 채권에 투자된 원금의 가중평균 회수기간
- ▶ 일련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들의 무계중심 역할을 하는 균형점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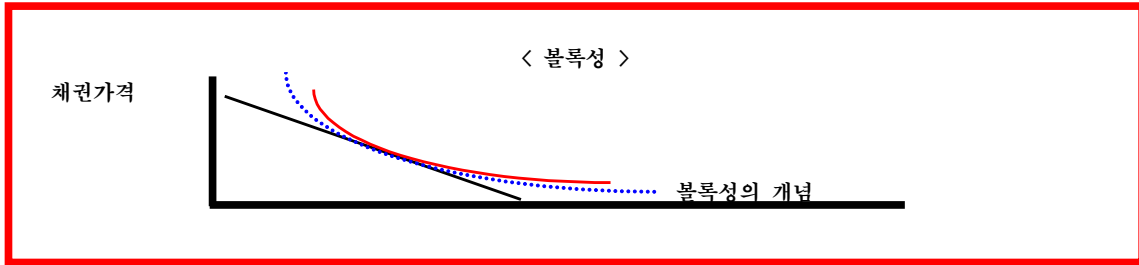
- **듀레이션 결정요인** : 듀레이션↑ = 만기수, 표면이자율↓, 채권수익율↓, 이자지급빈도↓ ★★★

### 17. 볼록성(convexity)

- 수익률곡선(비선형)과 듀레이션에 의한 채권가격변화(선형) 가격변동 오차발생(볼록성을 고려하면 오차감소)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채권수익율 ↓ ⇒ 실제채권가격 상승폭보다 과소평가 / 채권수익율 ↑ ⇒ 실제채권가격 하락폭보다 과대평가
- **블록성 결정요인 : 블록성수 = 만기↑, 표면이자율↓, 채권수익율↓ (듀레이션과 동일)**



### □ 수익률곡선

#### 18. 수익률곡선의 형태

- **우상향곡선** : 안정된 금융시장(선진국) 채권수익율
- **우하향곡선** : 불안정한 금융시장(개발도상국 : 고금리)
- **낙타형곡선** : 중기채 수익률 > 단기채·장기채 수익률
- **수평형곡선** : 일시적

19. 현물이자율(spot) 곡선 : 만기일시상환채권(무이표채)의 잔존기간과 채권수익율과의 관계

20. 선도이자율(forward rates)

#### 21. 수익률곡선 구조 관계

- 이자율 상승 기간 : 선도이자율 > 현물이자율 > 만기수익율
- 이자율 하락 기간 : 선도이자율 < 현물이자율 < 만기수익율

#### 22. 기간구조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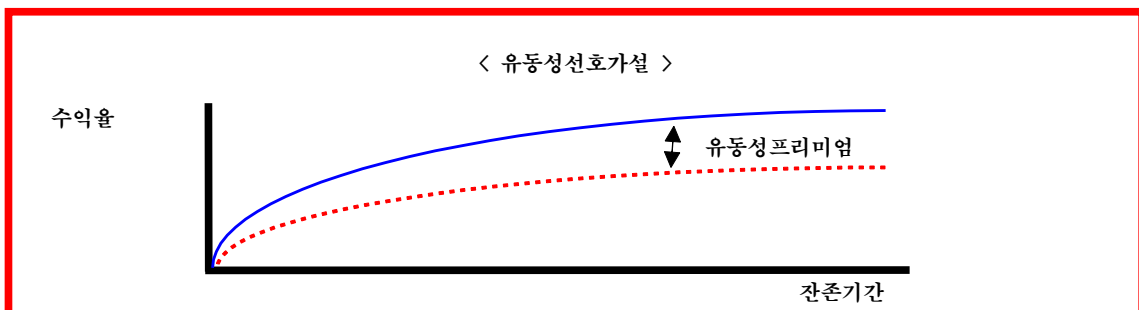
● **불편기대가설(unbiased expectation hypothesis)** : 투자자들이 미래이자율에 대한 동질적 기대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

- \* 미래이자율 상승 예상 : 수익률곡선은 우상향
- \* 미래이자율 일정 예상 : 수익률곡선은 수평
- \* 미래이자율 하락 예상 : 수익률곡선은 우하향
- \* 불편기대가설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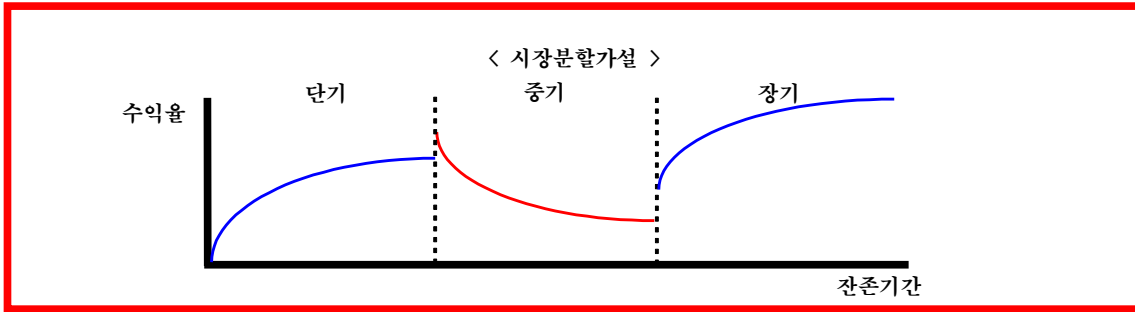
- ▶ 투자자는 위험중립형이다.
- ▶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은 완전대체관계에 있다.
- ▶ 미래 이자율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 **유동성선호가설** : 장기채권일수록 유동성이 낮아지는데 대한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채권수익율이 결정

- \* 미래이자율 상승 예상 : 수익률곡선은 우상향 + 유동성프리미엄
- \* 미래이자율 일정 예상 : 수익률곡선은 우상향



- 시장분할가설 : 만기수익율과 잔존기간 간에 어떤 체계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각 주체는 요구하는 잔존기간에 맞게 선호



23. 채권수익률 스프레드 : 위험이 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채권수익율의 차이

$$\text{수익률 스프레드} = \text{회사채수익율(위험수익율)} - \text{국채수익율(무위험수익율)}$$

□ 채권투자전략

24. 적극적투자전략

● 수익률 예측전략

- \* 수익률↓ : 장기채↑, 단기채↓, 표면금리↓, 듀레이션↑
- \* 수익률↑ : 장기채↓, 단기채↑, 표면금리↑, 듀레이션↓

● 채권 교체전략(s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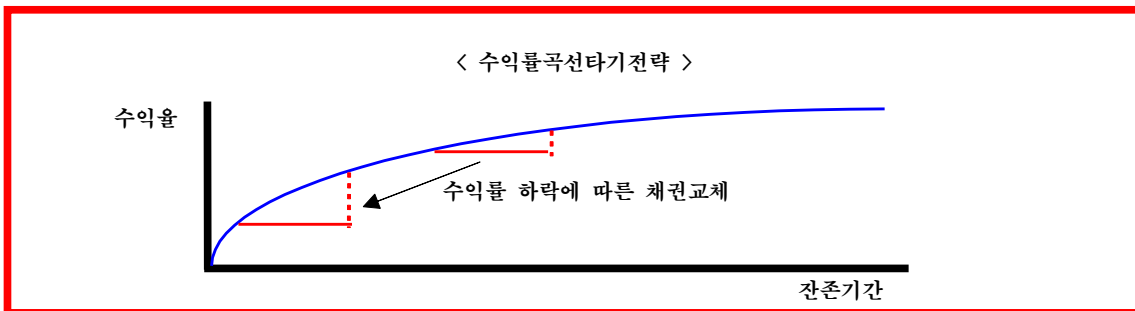
- \* 동종 채권 간 교체전략 : 단기적 시장 불균형의 경우 신용등급이 동일한 채권 교체

\* 이종 채권 간 교체전략

- ▶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 시 : 만기수익율↓(채권가격↑) 채권 매각 / 만기수익율↑(채권가격↓) 채권 매입
- ▶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 시 : 만기수익율↑(채권가격↓) 채권 매각 / 만기수익율↓(채권가격↑) 채권 매입

● 수익률곡선을 이용한 전략 ★★

\* 수익률곡선타기전략 ★



▶ Rolling Effect(장기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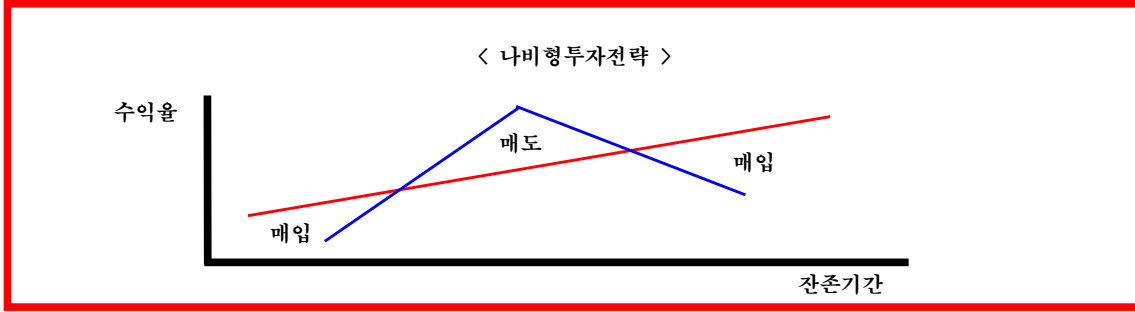
- ✓ 잔존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하지만, 가격차익을 반복적으로 획득 하여 경과이자와 시세차익을 얻는 효과
- ✓ Ex ) 10년 만기채의 잔존기간이 7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각하고 다시 10년 만기채에 재투자

▶ Shoulder Effect(단기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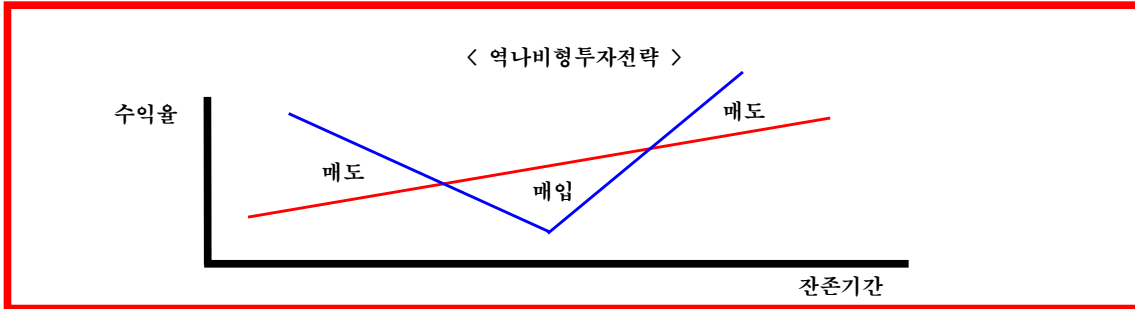
- ✓ 투자 후 일정기간 경과시 수익률의 하락이 더 큰 채권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높이는 투자방법
- ✓ Ex ) 1년짜리 채권을 투자하기보다 2년 만기채에 투자 후 1년 후에 매각하는 것이 투자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나비형 투자전략(바벨형 포트폴리오) : 중기채수익율↑(매도), 단·장기채수익율↓(매입)**



\* **역나비형 투자전략(불릿형 포트폴리오) : 중기채수익율↓(매입), 단·장기채수익율↑(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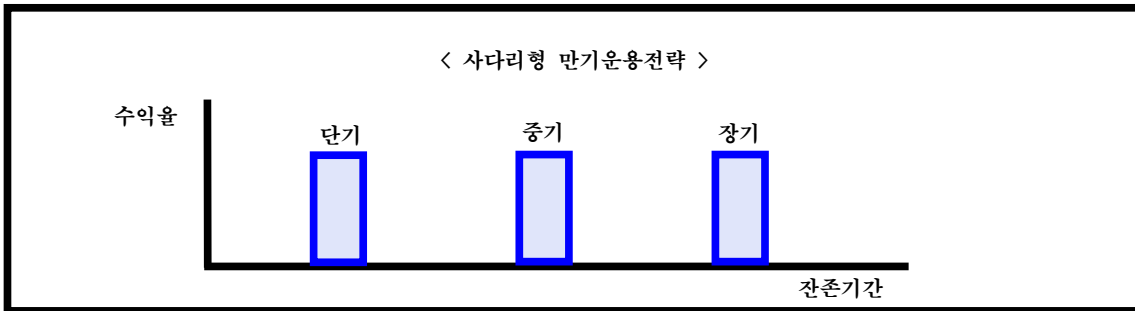


### 25. 소극적 투자전략

● 만기보유전략

● 인덱스펀드전략 : 시장전체의 흐름을 모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채권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

● 사다리형 만기운용전략 : 투자비중을 각 잔존기간별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



● 아령형(바벨형) 만기운용전략 : 단기채와 장기채 두 가지로만 만기를 구성하는 전략(중기채 구성 X)

● **면역전략 ★**

\*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격위험과 재투자수익 위험이 서로 상반관계를 이용하여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

\* 포트폴리오 듀레이션과 투자기간을 일치시킨다.

\* 수익률↑(↓) : 채권가격↓(↑) + 표면이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 서로 상쇄(투자 종료시 실현수익률을 목표수익률과 일치시킴)

### 26. 복합전략

● 상황대응적 면역전략 : 현재 투자성과 > 최소목표성과 ⇒ 적극적투자전략 / 현재 투자성과 < 최소목표성과 ⇒ 소극적투자전략

□ 채권의 내재가치분석

27. 거시경제분석 ★

- 국민소득 : 국민소득↑ ➡ 자금수요↑ ➡ 금리↑(금리는 경제성장에 후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 물가 : 물가↑ ➡ 실질수익률↓ ➡ 명목이자율↑(명목금리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 환율
  - \* 환율↑ ➡ 수입물가↑ ➡ 국내물가↑ ➡ 금리↑
  - \* 환율↓ ➡ 수입물가↓ ➡ 국내물가↓ ➡ 금리↓
- 정부정책 : 재정지출↑ ➡ 금리↑
- 경기변동 : 경기↑ ➡ 투자↑(위험자산으로 자금유입) ➡ 대부자금 수요↑ ➡ 안전자산 수익률↑ ➡ 금리↑

28. M. Porter의 산업 내 경쟁구조 ★★

- 진입장벽
- 기존업체들 간의 경쟁강도
- 상품의 대체성
- 구매자들의 교섭력
- 공급자의 교섭력

29.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분석

- 유동성비율 : 단기채무 상환능력 측정지표
- 안정성비율 : 장기채무 상환능력 측정지표
- 수익성비율
- 성장성비율
- 시장가치비율

## 제3과목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 제1장 금융상품분석과 투자전략

□ 국내금융기관 구분

1. 은행 : 일반은행, 특수은행, 한국은행

종류	내용
일반은행	✓ <b>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b> (은행법에 의한 규제)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b>농·수협</b> (특수법에 의한 규제)
한국은행 (중앙은행)	✓ 화폐발행,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조작,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운영 ✓ <b>중앙집중결제</b> 기능

2.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영세 상공인 및 서민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 목적(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규제)

● 신용협동기구 : **농·수협 지역조합**

● 우체국

3.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 :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회사

4.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 금융투자업 분류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투자매매업** : 자기계산으로 금융업 ★

▶ **투자중개업** : 타인계산으로 금융업 ★

▶ 집합투자업 : 복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제3자가 운용하고 그 손익을 배분하는 업무를 하는 금융업(funds)

▶ 신탁업

\*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완화된 진입규제)

▶ 투자자문업 :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금융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

● 금융투자상품

명칭	정의	내용	
전통적 증권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이 있는 증권	국채, 지방채, <b>사채</b> , 기업어음증권
	지분증권	출자지분이 있는 증권	<b>주식</b> ,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b>출자지분</b>
	수익증권	수익권이 있는 증권	신탁·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에탁증권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해 권리가 있는 증권	KDR, ADR
투자계약증권	공동사업에 투자 ➡ 손익분배 귀속	<b>집합투자증권</b> , <b>주식</b> , <b>출자지분</b>	
파생결합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 이익획득 및 손익회피	주기연계증권(ELS),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 은행의 금융상품

5. 예금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요구불예금

종류	내용
보통예금	-
당좌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법인사업자 가입가능</li> <li>✓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 목적</li> </ul>
가계당좌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가능</b></li> <li>✓ 가계수표 발행 목적</li> </ul>
별단예금	✓ 처리가 곤란한 예금 또는 <b>특정자금 등의 일시적 보관금 처리에</b> 이용되는 편의적 계정

### ● 저축성예금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 금액제한 X, 수시입출금 가능
- ▶ 예치금액에 따라 지급이자율 차등적용
- ▶ 유사상품 : **MMF(증권사, 은행), CMA(종금사, 증권사)**

\*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

구분	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저축 ★
의의	일시에 정기예금 목돈 예치 ⇨ 민영주택 청약권	월 정기적립식 상품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	월 정기적립식 상품(기한)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
취급기관	은행 (산업·수출입·제주은행 제외)		농협,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계약기간	1년(자동 재예치)	2~5년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시까지
예치금액 및 월부금	<input type="checkbox"/> 서울/부산 ✓ 85 ↓ : 300만원 ✓ 102m <sup>2</sup> ↓ : 600만원	매월 : 2만원 ~ 50만원	매월 : 2만원 ~ 10만원 (5천원 단위)
청약우선순위	✓ 1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기타	주택청약예금·부금·저금 중 1계좌만 가능 (2년 경과 후 조건 하 청약예금으로 변경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저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비과세(7년 이상 가입시), 신축자금 및 주택으로 대출가능
- ▶ 계약기간 : 7년 ~ 10년
- ▶ **소득공제 : 연간납입액 40%까지, 최고 300만원(5년 이내 해지 시 추징) ★**
- ▶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내(1만원 단위)

### \* 생계형 비과세저축

- ▶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입 : 기존상품 특약한 형태
- ▶ 불입한도 : **3,000만원**(전 금융기관 기준)

6. 단기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후순위채

구분	양도성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	환매조건부채권 (RP : Repurchasing Agreement)	표지어음	후순위채
의의	정기예금+양도성부여 (무기명 할인식 발행)	채권매도⇨(동일채권)재매수	상업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 ⇨ 새 어음 발행 (액면금액, 이자율 설정)	상환우선순위가 늦은 채권 (주주보다 우선상환)
목적	은행의 단기자금조달	증권담보부 자금조달	담보금액 범위 내 자금조달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이자 및 금리	할인식	확정금리	할인식, 확정금리	
예치기간	30일 이상(91일이 일반적)			-
불입한도	제한 없음(보통 500만 원 이상)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해지불가</li> <li>✓ 예금비보호상품</li> <li>✓ 양도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해지 <b>약정금리 이하 금리 적용</b></li> <li>✓ 예금비보호상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해지불가</li> <li>✓ 예금자보호상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해지불가</li> <li>✓ 예금 비보호상품</li> <li>✓ 양도가능</li> <li>✓ 분리과세(33%) 신청가능</li> </ul>

### 7. 신탁 :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

-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비교
- \* 금전신탁 : 금전으로 신탁
- \* 재산신탁 : 재산으로 신탁
  
- 금전신탁과 은행예금 비교

구분	금전신탁	은행예금
재산관계	신탁재산	은행재산
계약관계인	위탁자, 수탁자(은행), 수익자	예금주, 은행
이익분배	실적배당	확정배당
보전의무	X	O

### ● 신탁상품의 종류

#### \* 맞춤형신탁

- ▶ 고객의 지시에 따라 운용(주문형 신탁상품)
- ▶ 취급기관 : 은행, 증권회사(3개월 이상)

#### \* 분리과세신탁

- ▶ 1년이 지나면 분리과세(33%) 선택가능
- ▶ 취급기관 : 은행(1년 이상)

#### \* 연금저축(은행: 연금신탁) ★

- ▶ 노후대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 수령
- ▶ 예치한도 : 분기별 300만원(1만원 단위)
- ▶ 중도해지시 세금부과 : 기타소득세(20%) 부과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원금의 2% 가산세 추가
- ▶ 세계혜택

2000년 이전 가입	2001년 2월 이후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10년 이상 가입 시)</li> <li>✓ 소득공제 : 40%(5년 이상 가입시), 72만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령 시 정상과세</li> <li>✓ 소득공제 : 100%(5년 이상 가입시), 300만원 한도</li> </ul>

#### \* 재산신탁

- ▶ 금전채권신탁 : 위탁자의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신탁
- ▶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으로 수익 운용하는 재산신탁
- ▶ 부동산신탁 :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담보신탁

###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

### 8. 랩어카운트(wrap account) : 고객의 현금자산 ➡ 여러종류의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자산종합관리계좌) ★

구분	장점	단점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증권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 수익 ➡ <b>안정적인 수익기반</b></li> <li>✓ 고객관계의 긴밀화 및 장기화 ➡ <b>이익상충문제 해소</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rap계정에 대응 하기 위한 <b>체제구축필요</b></li> <li>✓ 수수료 수입총액이 감소 가능</li> </ul>
영업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이해상충가능성 적음</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에 대한 <b>독립성 약화</b></li> <li>✓ 보수감소</li> </ul>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으로 전문가 서비스 가능</li> <li>✓ 거래가 많아도 단일 수수료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가하락시 상대적 수수료 부담 증가</li> <li>✓ 불필요서비스 대가 지불</li> </ul>
투자자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의 저변확대</li> <li>✓ 신속적 운용가능</li> <li>✓ 일부 사무비용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보수의 감소</li> <li>✓ 시장상황에 관계 없이 운용성적 요구</li> </ul>

### 9. 현금자산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 단기성 상품운용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결제 및 급여계좌 가능)

MMF형 CMA	RP형 CMA	MMW (Money Market Wrap account)	종금형 CMA
MMF에 운용	RP에 운용	단기성 상품에 운용하는 Wrap account	-
투자설명서 교부	-	투자설명서 교부	-
예금비보호상품(손실가능)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에 대한 설명의무			예금자보호

### 10. 주가지수연계 금융상품 : 수익결정이 연동된 기초자산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

구분	증권사 ELS	은행 ELD	자산운용사 ELF
구성	우량채권+(채권수익:파생상품 투자)	대출+유가증권+(예상수익:파생상품 투자)	주가지수 연동
원금보장	O	O	X
예금보호	O	X	X
기타	중도환매 X ➡ 거래소 매매 O	주가지수에 따라 특정수익 지급	-

#### ● ELS 손익구조 유형 ★★

유형	수익구조
Knock-Out	만기 전 설정 수익률 도달 시 ➡ 만기수익률 확정
Bull Spr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률 : 주가지수 상승률에 비례</li> <li>✓ 일정수준 도달 시 수익의 상한구조 존재</li> </ul>
Reverse Convertible	최대하락수익률까지 하락 X ➡ 주가지수가 하락해도 약속수익을 지급
Dig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설정 수익 상승 시만 수익률 상승 향유</li> <li>(일정부분 미달시 주가 지수 향유 X)</li> </ul>

### 11.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 : 옵션성격의 증권

유형	수익구조
구분 및 가격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ll warrant : 살 수 있는 권리(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시 이익) (기초자산가격↑, 행사가격↓, 가격변동성↑, 잔존기간↑, 금리↑, 배당↓)</li> <li>✓ Put warrant(팔 수 있는 권리 :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 시 이익) (기초자산가격↓, 행사가격↑, 가격변동성↓, 잔존기간↓, 금리↓, 배당↑)</li> </ul>
발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피 100 개별주식 &amp; 코스피 200 주가지수</li> <li>✓ 현금결제방식</li> </ul>
상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파생상품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발행</li> <li>✓ 10억 원 이상, 공모발행</li> </ul>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위탁계좌 매매(신규계좌 X), 09~15시(호가접수 : 08~15시)</li> <li>✓ 매매수량단위 : 10증권</li> <li>✓ 지정가 호가 : IOC, FOK 가능 ★</li> <li>• IOC(Immediate Or Cancel : 즉시 집행 후 잔량 취소) : 조건충족 수량 체결, 미잔량 취소</li> </ul>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가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K(Fill Or Kill : 즉시 전량 집행) : 수량 충족 시 체결, 수량 미충족 시 취소</li> </ul> 내재가치(행사가치) + 시간가치(프리미엄)
------	--

- 특징 : 손익확대효과, 제한된 투자위험, 위험회피수단, 변동성매매 포지션 가능

### □ 집합투자기구

#### 12. 집합투자기구 개념과 분류

- 다수의 자금 ➡ 투자 ➡ 수익 배분

- 투자대상 분류(자본시장법 상 분류) :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40% 이상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50%) 초과하여 해당자산 투자하는 펀드			MMF(단기금융상품 투자)	투자비율에 제한 X
환매가능		환매금지형 펀드		

#### 13. 환매수수료와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T(당일)	T+1일	T+2일	T+3일	T+4일
주식형 50% 이상	3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		지급일	
	3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	지급일 선택	지급일 선택
주식형 50% 미만	5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	지급일	
	5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	지급일
채권형	5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지급일		
	5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지급일	
MMF	5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지급일			
	5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지급일		

#### 14. 투자신탁(수익증권)의 구조와 투자회사 비교

- 투자신탁의 구조 : 수익자(투자자), 판매회사(증권사, 은행, 보험 등),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신탁업자(은행 등)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비교

구분	투자신탁(계약형)	투자회사(회사형)
환금성	비교적 자유로움	취약(But, 시장에서 매매)
설립형태	신탁계약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
발행증권	수익증권	주식
중도환매	추가형 O / 단위형 X	개방형 O / 폐쇄형 X
운용방법 결정	약관	정관

#### 15. MMF(Money Market Fund : 뮤추얼 펀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성금융상품 투자</li> <li>✓ 안정성 &amp; 유동성</li> </ul>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가능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li> <li>✓ 간접투자증권 : 타 MMF 간접투자증권</li> </ul>
투자대상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외화표시자산구조설계증권 등</li> </ul>
신용등급	상위 2개 등급
환매	✓ 익일 입출금제도 원칙(당일 입출금도 가능 : 일정 한도내, 사전약정 시)

#### 16. 상장지수펀드(ETF) : 인덱스 펀드

#### 17.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엄브렐라펀드 : umbrella fund) : 다른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하위펀드 존재)

#### 18. 적립식펀드 : 평균매입단가 효과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19.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 외국펀드(영외펀드) 비교

구분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	외국투자신탁(영외펀드)
설정	국내에서 설정 ➡ 외국으로 투자	국외에서 설정 ➡ 국내로 투자
펀드기준가	₩	\$
운용주체	국내자산운용회사	해외자산운용회사
특징	환위험 증가	환위험 헤지 선택

### 20. 펀드비용

구분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판매수수료(선취, 후취)
대가기준	지속적 제공 서비스	판매행위
한도	5% 이내	
기준가격	영향 O	영향 X
비용	사전적 불확정	사전적 확정

### □ 생명보험사의 금융상품

#### 21. 보험상품 취급분류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제3보험	(생보사, 손보사 공통 취급상품)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보장성보험	본래기능 중점 :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저축성보험	저축기능 강화(연금보험, 교육보험)

### 22. 보험료

- 보험금 산출 : 영업보험료=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 예정률과 보험료 관계 : 예정위험률↑ ➡ 보험료↑ / 예정이율↑ ➡ 보험료↓ / 예정사업비율↑ ➡ 보험료↑

### 23. 실적배당보험과 전통형 보험 비교

구분	전통보험	변액보험 (variable life)	유니버설보험 (universal life)	변액유니버설보험
사망보험금형태	계약보험 가입금액	기본보험금+변동보험금	✓ 분리형 : 기본보험금+실제적립액 ✓ 통합형 : Max(기본보험금, 실제적립액)	
부리이율	예정이율(확정금리)	실적배당	공사이율(1년보증)	실적배당
운용계정	일반계정	분리계정	일반계정	분리계정
보험료납입	정액정기납		보험료납입 자유(추가납입, 중도인출기능)	

### □ 종합금융회사의 금융상품

#### 24. 종합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비교

구분	발행어음 (자발어음)	기업어음 (CP : Commercial Paper)	어음관리계좌 (CMA)
의의	종합금융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유통어음 (영업자금조달 목적)	기업의 단기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 ➡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매입 ➡ 투자자 매출	고객예탁금 ➡ 단기운영상품 (기업어음 및 국공채 투자 저축상품)
수익률	실세금리연동형 확정금리		실적배당
투자금액	100만원~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제한없음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제한없음)	(제한없음)	
예금보호	상시보호	X	상시보호

□ 예금보험제도 : 예금지급이 불가능상태 시 일정금액한도까지 미리 지급하는 금융보험제도

### 25. 예금보험가입 의무금융기관

- 대상(5개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 비대상 : 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자산운용회사, 우체국

### 26. 예금보험대상 예금

구분	보호대상 예금	보호대상 제외 예금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연금, 근로자 퇴직신탁 MMDA, 외화표시예금	CD, 개발신탁, 실적배당신탁, RP,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공제상품
증권	위탁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증권저축 현금잔액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사발행채권, MMF
보험	퇴직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채권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

27. 예금자보호 한도 :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 세금관련제도

### 28. 비과세제도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세금우대제도와 별도 가입가능
- 비과세 및 세금공제 동시 혜택
- 종류 :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탁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29. 세금우대제도 :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거치식 저축상품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

- 상품가입시에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 : 비과세한도와 별도로 세금우대 혜택
- 1인당 저축한도

대상구분	가입한도
일반인(만 20세 이상)	1,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3,000만원

- 세율 :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9.5% (일반과세 15.4% =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30.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 초과 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 제외대상 :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등

□ 투자전략과 자산배분

31. 통합적 투자관리 : 일반적으로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이루어짐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32. 투자과정 : 투자목표설정 ➡ 투자분석 ➡ 투자전략과 관리 ➡ 투자전술 수립 ➡ 사후통제

33. 자산배분전략 :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 자산배분 설계과정 이해

34. 자산집단의 선정 : 분산가능성, 독립성(자산간 상관성이 낮아야 한다.)

35. 기준수익율(benchmark return) : 성과평가 시 기준이 되는 수익률

36. 기대수익율 : 추세분석법, 시나리오분석법, 펀더멘털분석법, 시장공통예측치 사용방법

□ 자산배분전략 실행 및 종류

37. 전략적 자산배분 : 장기적인 자산구성비율을 정하는 의사결정(장기적 의사결정)

38. 전술적 자산배분 :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펀드 내에 자산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

39. 포트폴리오 수정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40. 투자 성과과약

- 내부수익율(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와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 산술평균수익율(ARR : Arithmetic average Rate of Return) : 단일기간수익율의 합 / 기간수
- 기하평균수익율(GRR : Geometric average Rate of Return) : 중도현금흐름이 재투자되어 증식되는 것을 감안한 평균수익률

## 제2장 범규 및 세제

□ 고객관리

### 1. 고객관리의 필요성

- 시장의 성장세 둔화
- 금융시장 성숙단계로 진입 : 신규고객 확보비용 > 기존고객 유지비용
- 고객의 욕구 개별화와 다양화
- 금융기관의 경쟁 가속화
- 내실경영 위주의 금융기관 경영전략 : 안정적인 이익창출 도모

### 2. 관계마케팅★★

매스마케팅(과거)	관계마케팅(현재, 미래)
고객획득	고객유지
단기적 고객유인	장기적 관계형성
상품 판매촉진	고객서비스
시장점유율	고객점유율★ (고객의 운용가능자금 중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
제품 차별화	고객 차별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자동화	정보화
사후처리 지향	사전대비 지향

3. 고객 발전 단계별 서비스



□ 고객상담의 과정

4. 고객상담의 4단계과정 : 고객과의 관계형성 → 고객의 Needs 파악 → 설득 및 해법 제시 → 고객의 동의 확보 및 Closing

● 1단계 : 고객과의 관계형성

- \* 투자상담도 Sales라는 인식이 중요
- \* 고객의 거절처리 방법★



● 2단계 : 고객의 Needs 파악(고객의 현재와 미래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고객의 높은 참여를 유도)

\* 폐쇄형질문(close-end question)

- ▶ 영업사원이 특정한 화제로 대화를 유도시 사용(대화의 흐름을 자신의 방향으로 리드시)
- ▶ ‘예’, ‘아니오’ 등의 간단한 대답을 유도
- ▶ 고객의 반응이 없거나 시큰둥할 때 사용
- ▶ 시간적인 제약으로 빠른 결정을 유도

\* 개방형질문(open-end question)

- ▶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로이 이야기 하여 주도록 유도
- ▶ 고객이 스스로의 상황에 광범위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유도

\* 확대형질문(high-gain question)★

- ▶ 질문을 통해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
- ▶ 제한된 시간 내에 고객과 영업사원 간에 Needs를 구체화하고 확신을 시킴
- ▶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단계 : 설득 및 해법 제시

\* 고객의 반감처리 방법(고객의 거절처리 방법과 구분)★



\* 고객의 반감처리 화법

- ▶ ‘Yes, But’ (‘맞습니다 맞고요’ 화법) :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이쪽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
- ▶ 부메랑법 : 고객이 거절한 내용을 활용하여 반전을 노리는 화법
- ▶ 보상법 :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이점을 활용하여 보충하는 대응화법
- ▶ 질문법 : 고객의 거절을 질문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
- ▶ 사례법 : 알맞은 사례로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
- ▶ 동문서답법(화제전환법) : 고객의 거절이 뜻밖이어서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고객의 거절을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
- ▶ 정면격퇴법(직접부정법) : 고객의 오해가 확실할 때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응방법

● 4단계 : 고객의 동의 확보 및 Closing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상담종결의 화법 \*

- ▶ 추정 승락법
- ▶ 실행 촉진법
- ▶ 양자 택일법
- ▶ ‘기회이익 상실은 손해’ 화법
- ▶ 사진제시
- ▶ 가입조건 문의법
- ▶ 호소

### \* 효과적인 고객동의 확보기술

- ▶ 직설 동의 요구법
- ▶ 이점 요약법
- ▶ T-방법(대차대조표 방법/franklin approach) : 상품을 미선택시 손해를 T막대 형태의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비교설명 방법★
- ▶ 결과탐구법 : 고객이 동의를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이를 되물어서 동의가 가져다줄 결과를 설명하는 방법

### \* Closing의 필수요건

- ▶ 고객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전체적인 이해도 확인)
- ▶ 각각의 고객성향 및 스타일에 따라 Closing을 달리함
- ▶ 첫 번째 거절해도 굴하지 않음
- ▶ 바잉 시그널을 감지하는 능력을 터득
- ▶ Closing을 하기 전에 시험 Closing을 시도(trial close)★
- ▶ 침묵을 통해 답을 기다리는 마음을 전달
- ▶ 목표를 높게 잡고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적인 방법을 개발
- ▶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태도로 Closing에 임함

### □ 직무윤리강령

#### 5. 신의성실의무 : 모든 직무윤리기준의 근간이 되는 의무(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

투자상담업무종사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갖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시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신용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 6. 전문지식배양의무

#### 7. 공정성 유지의무

#### 8. 소속회사 등의 지도 및 지원의무

\* 사용자책임 : 피용자(금융투자업종사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직무윤리기준

#### 9. 고객에 대한 의무

● 충실의무 : 고객 및 회사 등의 신임관계에 있는지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 등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객 최선이익의 원칙)

영업실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과도하고 빈번하게 거래하는 과당매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 고객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어긋남

● 주의의무 :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주의 업무 판단시점 : 업무가 행해진 시점 상황(과거 또는 미래 X)

\*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과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자기거래의 금지의무 :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know your customer rule : 고객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 적합성의 원칙 :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 적정성의 원칙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모두 포함★★★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

\*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금지

● 고지 및 설명의무

● 사실과 의견의 구분의무 : 투자정보를 제시 할 경우 ‘사실’ 과 ‘의견’ 을 명확히 구별

● 채위임의 금지 : 고객의 요청 및 승낙,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10.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전달금지

● 선행매매 금지(front running) :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한다.★★**

● 스캘핑의 금지(scalping) : 자신이 분석한 자료가 공표되기 전 당해 증권을 매수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표한 후 주가가 오르면 당해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를 **금한다.**

□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

11. 내부적 통제

● 내부통제기준 마련 : 이사회 결의

※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조치

✓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

✓ 경고 : 구두 및 문서로 훈계(시말서 제출 X)

✓ 감봉 : 임금액의 일정액을 공제

✓ 해고 :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 준법감시인제도 : 1인 이상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파생상품매매시 준법감시인의 승인이 아니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 자율규제

- 자율규제기관을 통한 관리 :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 13. 행정제재

- 법적공공기관을 통한 관리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 제4과목 법규 및 세제

##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자본시장법 총설

- 금융기능 = 투자자 + 투자상품 + 투자업 ★★★
- ✓ 투자자 : 전문인, 일반인(투자자 보호 : 선진화)
- ✓ 투자상품 : 원본손실여부(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원본초과손실여부(증권, 파생상품) ★
- ✓ 투자업 : 인가제(매매, 중개, 집합, 신탁), 등록제(자문, 일임)

### 1. 자본시장법 특징

-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 서면 확인
  -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의 제한 장치(chinese wall) 마련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신탁(처분 권한이 없는 것)의 수익권 ★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

### 4. 증권분류 ★★

명칭		정의	내용
전 통 적 증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이 있는 증권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지분증권	출자지분이 있는 증권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수익증권	수익권이 있는 증권	신탁·투자신탁 수익증권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권	증권예탁증권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해 권리가 있는 증권	KDR, ADR
	투자계약증권	공동사업에 투자 ➡ 손익분배 귀속	집합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파생결합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 이익획득 및 손익회피	주가연계증권(ELS),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 □ 자본시장 행정기관

#### 5. 금융위원회 ★★★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

\* **위원장 :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

-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

\* **금융기관설립 인·허가 및 합병 승인 결정**

\* 금융정책 수립 : 금융관계 법률 및 규정 제정 및 개정(감독규정 및 제도 마련)

- 운영 : 제적위원 3인 이상 요구 ➡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로 의결

#### 6. 증권선물위원회 ★★

- 불공정 거래 조사 전담기관 ★

- 기업회계제도 및 감리제도 운영전담기관 ★

● **위원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기타위원 : 5인으로 구성

#### 7. 금융감독원 ★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기능 및 업무보좌기능 수행 : 금융기관 검사기관

● **무자본 특수법인 : 금융위원회가 예산 승인 ★**

● **원장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집행간부 및 직원은 공무원 의제로 적용

#### 8. 한국금융투자협회

● **자율규제기관(법정기관) : 분쟁 자율조정**

-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 업무

- 프리보드시장 거래 업무

- 금융인력 교육

#### 9. 한국거래소

● **주식회사 :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

- 자율규제기관(법정기관)

- 유가증권 업무

- 연고지 : 부산

#### 10. 증권금융회사 : 자본시장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인가제 허용)

#### 11. 한국예탁결제원

● **특수공법인**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유가증권 집중예탁 및 보호관리, 명의개서 대행,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 □ 금융투자업

#### 12. 금융투자업의 분류 및 개념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 투자매매업 : 자기계산으로 금융업 ★
- \* 투자중개업 : 타인계산으로 금융업 ★
- \* 집합투자업 : 복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제3자가 운용하고 그 손익을 배분하는 업무를 하는 금융업(funds)
- \* 신탁업
  
-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완화된 진입규제)
- \* 투자자문업 :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금융업
-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

#### 13.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 기능별 규제 : 6가지 기능(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한 업무단위를 추가(기능별 인가) : Add-on 방식 ★**
- 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가는 강화된 진입요건 적용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은 강화된 진입요건 적용(전문투자자 1/2로 완화)

#### 14.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항목	인가	등록
대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 금융기관</li> <li>✓ 임원의 결격사유 규제</li> <li>✓ 최저 자기자본 요건 충족</li> <li>✓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충족</li> <li>✓ 대주주요건의 충족 규제</li> <li>✓ 사업계획의 타당성</li> <li>✓ 이해상충방지체계 확립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 외국 투자자문업자</li> <li>✓ 임원의 결격사유 규제</li> <li>✓ 최저 자기자본 요건 충족(대통령령)</li> <li>✓ 일정 수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보유</li> <li>✓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li> </ul>
인가 및 등록권자	금융위원회 신청서제출	금융위원회 신청서제출 (예비등록제도 X)
영업개시	허가 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대주주에 대한 규제
- \* 대주주 : 해당 회사주식 최대 보유자, 10% 이상 소유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
- \* 인가제 대상 투자업 : 금융위원회 변경 사전승인,
- \* 등록제 대상 투자업 : 금융위원회 변경 사전승인 X(2주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사외이사 X
- ✓ 상근감사위원회 1인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

- ✓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 1/2이상)
- ✓ 상근감사위원회 1인 이상 (이사총수 2/3이상)
- 대표 : 사회이사

###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 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 \*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이사회 결의 1인 이상 : 금융위원회 보고)

### ● 소수주주권 : 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일반투자자 보호) ★

### 16. 건전경영의 유지

#### ● 경영건정성 감독

- \* 재무건정성 기준과 유지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유지(등록업 : 순자본 유지의무 X) ⇨ 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
-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1월 이내 금융위원회 제출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 \* 대주주 발행증권의 소유금지
- \*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의 소유제한 : 자기자본 8% 초과 X(8%이내 가능) ★
- \* 신용공여 제한
  - ▶ 예외 :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자기자본 8% 이내 소유
- \* 대주주와의 거래 : 8%이내, 이사회 승인, 거래 후에는 공시 및 보고의무

### 17.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 ●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

-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 :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의무, 금융투자업자 간의 정보교류의 차단시스템 구축

#### ●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 : 상호진실주의(업무에 맞는 상호 선정사용)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 : 7일 전까지 ⇨ 금융위원회 신고

#### \* 겸영의 범위

- ▶ 대출업무 : 투자매매업자
- ▶ 지급보증업무 : 투자매매업자
- ▶ 지급결제 업무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 대차거래, 중개·주선·대리업무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 업무위탁 : 원칙적 허용, 본질업무 위탁 X

- \* 재위탁 : 원칙적 금지, 부수업무에 허용(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에 허용)

#### ● 투자권유

- \*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 \* 적합성 원칙 : 투자자의 목적, 재산상태, 위험태도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 적정성 원칙 ★

- ▶ 파생상품 판매관련
- ▶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시 일반투자자의 정보파악(투자자의 목적, 재산상태, 위험태도 등이 요구됨)
- ▶ 주권상장법인도 일반투자자에 포함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투자권유 규제(unsolicited call) :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보험계약, 증권 미적용)
- \* 투자광고 규제 ★
- \*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금융투자협회 :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 \* 자격 : 증권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 갖출 것을 요구
-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금지
- \* 책임발생시 업무 위탁한 금융투자회사 책임
- \* 투자권유대행인도 투자권유규제 동일적용

### ● 약관규제

- \* **약관의** 제정·변경 :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 \* **표준약관**의 제정·변경 : **7일 이내 협회보고**

### ● 소유증권의 예탁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의무화(외화증권 예외)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원칙적 허용(내부통제기준에 부합, 분기별 매매확인)

##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 매매관련규제

- \* 매매형태 명시 의무
- \* 자기계약 금지
- \* 시장집중 의무 : 정규시장을 통하여 거래
- \* 자기주식 취득 : 일정수량 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 주문을 받은 경우 **장외취득** 가능
- \* 자기주식 매매 :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
- \* 임의매매의 금지

###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선행매매의 금지(front-running)** :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금지 ★**
- \* 스캘핑(scalping)의 금지 :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금지
- \*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유형의 성과보수 지급금지
- \* 투자권유관련규제
- \* **일임매매의 금지** :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 **신용공여** :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 금지 (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일부 예외허용)

### ● 매매명세의 통지 : 체결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

### ●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 집합투자증권 판매

- \* 원칙 :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 **5% 한도 내**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장외거래 규제 :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예외허용(위험의 종류, 금액확인 및 관련자료 보관의무)

### 19.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주요 제한사항

#### \* 증권부문

- ▶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동일종목에 투자하는 행위금지
- ▶ 위험평가액 > 자산총액-부채총액 투자 금지

- \* 부동산부문 : 국내 부동산 3년 이내 처분금지(국외 부동산 일정기간 이내 처분 금지)

#### \* 집합투자증권부문 : 분산포트폴리오 구성 유도

- ▶ 20%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투자 행위 금지
- ▶ 50%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투자 행위 금지
- ▶ 40%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투자 행위 금지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 목적의 취득 금지

- 금전차입 등의 제한

#### \* 금전차입금지

- ▶ 예외 : 일시적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경우, 일시적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경우

#### \* 금전대여금지

- ▶ 예외 : 30일 이내 단기대출 허용

- 의결권

- \* 의결권 제한적 행사 조건 :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shadow-voting)

- \* 의결권 적극 행사 조건 :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 \* 의결권 행사의 공시 : 자산총액 5%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 \* 정기공시 : 3개월 마다 1회

#### \* 수시공시 ★★

-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결정 및 그 사유
- ▶ 부실자산 발생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 수익자총회나 주주총회 결의 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증권신고서 ➡ 금융위원회수리(예비투자설명서) ➡ 효력발생기간 ➡ 청약(본투자설명서) ➡ 납입 ➡ 상장

### 20.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

- 증권의 모집과 매출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공모발행

- ▶ **불특정 다수(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개적으로 모집 및 매출
  - 50인 상정기준 : 과거 6개월 이내 청약 권유 받은 자(제외대상자 : 연고자, 전문가)
- ▶ 대규모 자금조달 시 이용, 일반적으로 간접발행으로 이루어짐

- ✓ **모집 :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 ✓ **매출 :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밖(장외시장)에서 취득의 청약을 권유(전매제한 규정 미적용)**

### \* 사모발행

- ▶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
- ▶ 일반적으로 직접발행으로 이루어짐

## 21. 기업공시 규제

### ● 발행시장 공시

#### \* 증권신고서

- ▶ 제출대상 : **10억 원 이상** 모집 및 매출 시(**10억 원 미만 소액발행 제출 면제**) ➡ **금융위원회 제출 ★**
- ▶ 적용면제대상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지방자치단체 보증채권
- ▶ 예측정보 공시제도
- ▶ 신고 서류의 심사 : 금융위원회는 형식요건 심사
- ▶ 효력발생 : 일정기간 경과 후 효력발생
- ▶ 철회신고서 : 청약일 전까지 신고 ➡ 금융위원회 제출

※ 수리와 효력발생의 의미 :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X ★★★

#### ▶ 효력발생기간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 **채무증권(일괄신고서에 의해 발행) : 5일**
- 주주배정증권, 제3자 배정증권, **집합투자증권(배정방식 환매금지형), 채무증권(일반) : 7일**
- 일반공모증권, 주주우선공모증권, 주권상장법인 주식, **집합투자증권(상장 환매금지형) : 10일**
- 지분증권 : 15일

\* **일괄신고서** 제도 :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 모집·매출의 예정물량을 일괄해서 사전에 신고하여 필요한 추가서류만을 제출하는 제도

구분	일반기업	잘 알려진 기업
발행증권	일반사채	일반사채, <b>주권, 주권관련사채</b>
상장기간	-	5년 경과
시가총액	-	<b>5,000억 원</b>
정기보고서	최근 1년간 제출	최근 3년간 제출
행정조치	최근 1년간 증권발행제한조치 X	최근 3년간 증권발행제한조치 X
발행예정기간	2월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 \* 투자설명서 : 투자권유문서

- ▶ 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사용
- ▶ **예비투자설명서 : 증권신고서 제출시 제출(효력발생 전) ★**
- ▶ 간이투자설명서 : 광고등에 사용되는 간략한 설명서

\*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 모집·매출 후 금융위에 제출

### ● 유통시장 공시

#### \* 정기공시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대상 : 주주수 500명 이상 법인(300명 미만 시 제출 면제)
- ▶ 사업보고서(90일 이내), 분기·반기보고서(45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출
- ▶ 연결제무제표 : 90일 경과 후 30일 이내(총 120일 이내)

\* 수시공시 : 사유발생 당일 거래소에 신고

-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또는 금지
- ▶ 영업활동 정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 ▶ 해산사유 발생 시, 이사회 결의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의 시
- ▶ 주요 영업 양수도 : 자산의 10% 이상

\* 공정공시 : 정보 불균형 해소(적용 제외 :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한 정보제공,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조회공시 : 공시요구시점 오전일 경우 오후(6시)까지 공시,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

###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기업인수 합병(M&A)제도	
공개매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6개월 이내/10명이상/5%이상 취득시</li> <li>✓ 공개매수기간 : 최장 60일 이내</li> <li>✓ 공개매수조건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일가 매수원칙</li> <li>• 전부매수원칙 : 매수예정총수 미달 시 전부 거부/매수예정총수 초과 시 초과분 매수 거부</li> </ul> </li> <li>✓ 공개매수신고서 : 금융위원회 제출</li> <li>✓ 취득주식의 의결권 제한</li> <li>✓ 6개월 이내 재 공개매수 제한 폐지</li> <li>✓ 철회 : 신고서 기재한 경우 가능</li> <li>✓ 공개매수 의무 적용 면제 : 소각목적 주식취득/주식매수청구주식 매수/특수관계인 주식 매수</li> </ul>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5% R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이상 소유자 및 1%이상 지분 변동 시 보고</li> <li>✓ 5일 이내(기관투자자 익월 10일 이내 : 신규보고 경우 5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보고</li> <li>✓ 냉각기간 : 경영참가 목적경우 5일 동안 의결권 행사 제한</li> </ul>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명 이상 의결권 위임 권유 ▶ 위임장, 참고서류 제공 의무화</li> </ul>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처분 신고서 제출 ▶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출</li> <li>✓ 취득한도 : 이익배당한도 내 100% 까지 가능</li> <li>✓ 취득기한 : 신고서제출 3일 후 ~ 3개월 이내</li> <li>✓ 이사회 결의</li> </ul>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범위 : 당해 법인증권+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 등(ELS, ELW 등)</li> <li>✓ 내부자 범위(아래 해당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내부자 : 당해법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li> <li>• 준내부자 : 회계법인, 법률고문 등 관계된 자</li> <li>• 정보수령자 :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1차 수령자</li> </ul> </li> </ul>
내부정보 이용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효력발생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 1일 경과 후</li> <li>• 언론, 방송 : 6시간 후</li> <li>• 공시방송망(DART, KIND) : 3시간 후</li> </ul> </li> </ul>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내부자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하여 취득한 이익 ▶ 해당법인 반환</li> </ul>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상관 없이 반환) ✓ 예외 :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제도</b>	✓ 변경시 <b>5일 이내</b> 소유상황 보고 ■ <b>증권선물위원회</b> , 거래소 보고
<b>공매도 금지</b>	✓ 타인으로부터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빌려서 이를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목적 또는 손실회피 목적의 매도금지
<b>시세조종행위 규제</b>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통정거래, 가장매매 금지 • 통정거래 : 동일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 가장매매 : (권리이전을 목적 X)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b>사기적 행위 금지</b>	부당한 방법을 통한 주식매매 행위 금지(추상적 조항)

※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금지규정 폐지**

## 제2장 금융위규정

###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제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 □ 증권의 발행신고

####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외
  - \* 인수인의 명칭표시 X
  - \*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 계열사 및 그 임원 ★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외 ★
    -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 체결
    - ▶ 50인 미만에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경과일수	특례
1일	정정신고서(발행가격 및 이자율 변경)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3일	정정신고서(일괄신고서, 파생결합증권의 정정신고서),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5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7일	파생결합증권의 모집·매출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

\* 신용평가제한 ★

- ▶ 증권분석기관 ⇐(자본금 3% 이상 출자)⇒ 해당법인
- ▶ 증권분석기관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해당법인 / 해당법인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증권분석기관
- ▶ 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 증권분석기관·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 \* 효력발생일, 공모가액, 청약기간, 납부기간, 열람장소 등
- \* 발행회사 명칭, 대표주관회사 명칭, 증권의 종목 등

● 발행실적보고서 : 모집 또는 매출 완료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 ★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 공개매수의 면제

- \* 소각목적
- \* 주식매수청구
- \* 전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권리행사
- \* 특수관계인 및 외국투자자의 주식 처분
- \* 증권매매 중개
- \* 정부, 법원, 채권금융기관 및 채권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규정에 의해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rule)

- \* 5% 이상 대량보유한 자 1%이상 변동시 신고
- \* 연명보고 :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함께 보고(위임장 제출)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10명 이상 의결권 위임 권유 ⇨ 위임장, 참고서류 제공 의무화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 사업보고서 : 주권상장법인, 500인 이상 발행인, 90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

구분	매수주문 장 개시전	매도주문 장 개시전
주문가격	전일종가 기준으로 5% 높은 가격 범위 이내	전일종가 기준으로 2호가 가격단위 낮은 범위 이내
1일 최대주문수량	취득신고주식수 10%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주문 제출	발행주식총수 1% 종료전 30분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b>사전공시</b>	<b>매수주문 전일 장 종류 후 거래소 신고</b>	<b>1일 매도주문수량 거래소 신고</b>
위탁중개업자의 수	주문 위탁 투자중개업자 : 1일 1개 회사 위탁 투자중개업자 : 5개 회사사 이내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 외부평가기관 = (자본금 3% 이상 출자) ⇒ 합병당사회사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 일반공모증자 : 할인율 30% 이내
- 제3자 배정증자 : 할인율 10% 이내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금지기간 : 공모시 1월간, 사모시 1년간

□ 금융투자업 규정

9. 금융투자업 인가

항목	인가
절차	예비인가 신청(금융위 신청 : 2개월 소요) ⇒ 금융위 인가(1개월 소요) ⇒ 본인가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 금융기관</li> <li>✓ 임원의 결격사유 규제</li> <li>✓ 최저 자기자본 요건 충족</li> <li>✓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충족</li> <li>✓ 대주주요건의 충족 규제 : 자기자본 &gt; 출자금액 x 4, 부채비율 200% 이하, 5년동안 벌금 X</li> <li>✓ <b>사업계획의 타당성</b></li> <li>✓ 이해상충방지체계 확립 의무 :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장치(투자자보호)</li> <li>• 협회 : 표준내부통제기준 작성</li> </ul>

10. 금융투자업 등록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사항

- 지체 없이 보고
- \*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및 합병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영업의 정지, 인·허가 취소 및 부도
  
- 7일 이내 보고
- \* 상호변경,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해임, 최대주주변경
- \* 의결권 발행주식의 1% 이상 변동 시
  
- 45일 이내 보고
- \* 지점·영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

11. 회계연도 :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12. 재무건정성

- **자산건정성 분류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5단계 분류) ★**
- \* 분류시기 : 분기별
- \* 감독위원장에게 결과보고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충당금 적립기준** : 정상(0.5%), 요주의(2%),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 **영업용 순자본비율** : 100% 이상 유지 의무 ★

\* **영업용순자본 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 **영업용순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차감항목합계액 + 가산항목합계액

✓ **차감항목** : 유형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 특수관계인 채권, 채무보증금액, 임차보증금액, 전세권 등

✓ **가산항목** :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금융리스부채, 자산평가이익

▶ **총위험**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 **시장위험액** : 금융회사의 보유자산, 거래 등이 시장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금리, 주식위험액, 집합투자증권, 외환, 일반상품, 옵션위험액 등)

✓ **신용위험액**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

✓ **운영위험액** : 임직원의 위법·해태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액

### 1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

● **경영실태평가 분류** :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 **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 금융위원회

구분	사유	내용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용순자본 비율 &lt; 150%</li> <li>✓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 &amp; 자본적정성 4등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및 조직운용 개편</li> <li>✓ 점포관리의 효율화</li> <li>✓ 부실자산의 처분</li> </ul>
경영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용순자본 비율 &lt; 120%</li> <li>✓ 종합평가등급 4등급(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li> <li>✓ 점포의 폐쇄·통합</li> <li>✓ 합병·편입 계획수립</li> </ul>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용순자본 비율 &lt; 100%</li> <li>✓ 부실금융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li> <li>✓ 임원의 직무집행정지</li> <li>✓ 합병·편입</li> </ul>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시기 및 이행기간**

\* **제출시기** : 2월 범위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이행기간**

▶ **경영개선 권고** : 6월 이내

▶ **경영개선 요구** : 1년 이내

▶ **경영개선 명령** : 금융위원회가 기한 결정 일 이내

14. 업무보고서의 제출 : 분기 말 업무보고서는 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제출

### 15. 공통영업행위규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

●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 :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의무, 금융투자업자 간의 정보교류의 차단시스템 구축

\* **정보교류의 차단 예외** : 국채·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매매,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증권 매매 등

●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 : 상호진실주의(업무에 맞는 상호 선정사용)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 : 7일 전까지 ➡ 금융위원회 신고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겸영의 범위

- ▶ 대출업무 : 투자매매업자
- ▶ 지급보증업무 : 투자매매업자
- ▶ 지급결제 업무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 대차거래, 중개·주선·대리업무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업무위탁 : 원칙적 허용, 본질업무 위탁 X

\* 재위탁 : 원칙적 금지, 부수업무에 허용(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에 허용)

### ● 투자권유

\*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 적합성 원칙 : 투자자의 목적, 재산상태, 위험태도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 적정성 원칙 ★

▶ 파생상품 판매관련

▶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 매시 일반투자자의 정보과약(투자자의 목적, 재산상태, 위험태도 등이 요구됨)

▶ 주권상장법인도 일반투자자에 포함

\* 투자권유 규제(unsolicited call) :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보험계약, 증권 미적용)

\* 투자광고 규제 : 내부통제기준 수립, 타 금융업자의 상품과 비교 X, 준법감시인 확인, 협회 사전심사

\*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금융투자협회 :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 기록보관 및 유지 의무 : 3영업일 이내 제출, 장부외거래 기록 의무

● 소유증권의 예탁 : 주식(증권예탁원 보유), 금전(증권금융회사 보유)

## 16.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선행매매의 금지(front-running) :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금지 ★

\* 스캘핑(scalping)의 금지 :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금지

\*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유형의 성과보수 지급금지

\* 투자권유관련규제 :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금지

\* 일임매매의 금지 :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손실보전의 금지

\* 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협 고지

\*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 신용공여 :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 금지  
(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일부 예외허용)

\* 신용융자 및 신용대주

▶ 신용융자 : 유가증권의 매수결제를 하는 것

▶ 신용대주 : 유가증권의 매도결제를 하는 것

\* 신용거래계좌의 설정 :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 징구(위탁증거금으로 사용가능)

\* 신용공여 회사별 한도 : 자기자본 범위 이내

\* 담보비율 :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

\* 신용거래보증금 : 최저보증금 40% 이상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담보증권의 평가 \*

- ▶ 청약주식 : 취득가액
- ▶ 상장주권 : 당일종가
- ▶ 상장채권 :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투자매매업자가 산정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당일 고시된 기준가격

### \* 임의상환방법 : 처분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

- \* 신용거래 제한 : 순자산액 100만원 미달
- \* 신용거래 가능종목 : 증권시장 주권, 증권예탁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ETF)
- \* 신용거래 중단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대상종목

### ●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 \* 월간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 : 다음달 20일 까지
- \* 반기 말 잔고현황 : 반기종료 후 20일 까지
- \* 통지간주 : 전자통신방법 사용, 수취 거절원 제출 시, 3회 이상 반송

### ● 투자자 예탁자산의 관리

- \* 의무예치액 : 100% 이상
- \* 운용가능 대상 : 국채 및 지방채, RP, 한국은행 예치, 예금보호대상 예금, CD매입, MMF 등(안정성의 원칙)

###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 환매시점 : 주식 50% 이상 펀드 ▶ 오후 3시 기준, 기타 펀드 ▶ 오후 5시 기준
- \* 판매수수료 자료는 5년간 보관 및 유지

## 17.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 운용

- \* 집합투자업자의 명의의 자산취득
- \* 부동산관련 자산
- \* 후순위사채권 투자
- \* 50% ↑ 환매조건부 매도 제한

###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
- \*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 \*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 보고 및 공시 : 자산운용보고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제공(보고서 발행비용은 집합투자업자 부담)

## 18.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서면 체결, 일임보고서(3개월 마다 1회 이상 제공)

## 19. 장외거래

- 채권 장외거래 : 체결 일 익일 ~ 30영업일 이내 \*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 현황 익월 10일 까지 협회보고 \*
- 단주의 장외거래 \*
- \* 예외 : 공동계좌(유가증권시장)

- \* 매매약정단가 : 주문일의 익일 증가
- \* 결제 : 매매약정단가 결정 일의 익일

20. 집합투자기구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잔존기간(평균 90일 이내)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집합투자기구, 혼합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20%↑ 환매 X 증권에 투자한 기구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0종목 이상(각 30% 이상 초과 X)

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현금지급원칙, 15일 이내 지급
- 환매수수료 : 투자자 부담
- 환매연기 : 집합투자업자 결정 ➡ 주주총회 의결 ➡ 서면·통신으로 전달

22.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면제규정 ★

- 상장의무 미적용
-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 판매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자산운용관련 규제 : 동일종목 10% 이내
- 회계감사·결산서류비치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

- 자율규제기관으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수단
- 전문성, 효율성, 즉시성, 유연성
- 법정기관으로서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쟁조정)
-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록 보관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례 ★

\*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의무

\*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금지

4.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 설명서(투자설명서) :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 핵심설명서

\* 공모발행시 적용(ELW제외)

\* 설명서를 교부한 후 핵심설명서 교부(핵심설명서만 교부 X)

●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특례

\* 공모발행시 적용(ELW 제외)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손실요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통보사항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

▶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5. 펀드판매

● 금지행위

\* 특정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의 경우

\* 매매주문을 판매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

\* 예상수익률의 보장 및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암시하는 경우

● 잔고통보

\* 월간 매매내역 : 익월 20일 까지

\* 반기 매매내역 및 무거래 계좌 :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6. 투자권유준칙 : 금융투자협회 제정(회사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단순화 가능)

● 적합성의 원칙

\*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 고객의 정보가 없더라도 고객의 확인 하에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로서 보호 받지 못한다.

\* 고객 등급은 5단계로 구분 : 1단계(안정형), 2단계(안정추구형), 3단계(위험중립형), 4단계(적극투자형), 5단계(공격투자형)

▶ 상담결과를 점수화(Scoring System) 등을 활용하여 일정 유형으로 분류(회사 자율)

▶ 위험 등급이 낮은 투자자를 높은 위험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

7. 전문투자자의 구분 ★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로 전환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한국은행, 은행, 종합금융회사</li> <li>✓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li> <li>✓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li> </ul>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로 전환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li> <li>✓ 지방자치단체 및 공제사업 법인</li> </ul>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금융상품잔고 100억 원 이상인 일반투자자(협회에서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법인 및 단체)
	✓ 금융상품잔고 50억 원 이상+계좌개설 후 1년이 지난 일반투자자 (협회에서 전문투자자로 지정이 된 개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 8. 투자권유대행인 ★

- 금융투자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금지
- 금지행위
  - \*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 조사분석대상법인의 제한
  - \* 인수합병관련 : 발행총수의 5%를 초과하는 법인
  - \*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법인
  -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회사와의 이해관계 고지의무
  - \*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
  - \* 인수합병관련 5%이하인 법인
  - \*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간 2회 이상의 조사분석자료를 무료로 공표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 \* 24시간 까지 조사분석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금지
  - \* 7일 동안 공표한 투자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

### 10. 투자광고 ★

- 의무표시사항
  - \*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 \*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 \* TV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 시 1/3이상 시간 할당 ★
- 투자광고 시 금지행위
  - \*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하는 행위
  - \* 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 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홈쇼핑광고 시 준수사항
  - \*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 및 집행할 것.(생방송 X)
  - \*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 위험고지사항을 광고시간의 1/3 이상 포함할 것

● 펀드운용실적 표시

- \* 설정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운용규모가 200억 좌 이상일 것
- \* 6개월 이상의 기간누적수익률 사용(MMF 제외)
- \* MMF 특례

- ▶ 최근 1개월 이상의 실현수익률 표시
- ▶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 X
- ▶ 다른 금융회사의 MMF와 비교광고 X

\* 운용실적 비교광고 ★

- ▶ 비교대상이 동일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 ▶ 동일한 펀드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
- ▶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내림차순으로 산정한 순위 인용
- ▶ 운용실적 비교대상기간을 연단위로 2기간 이상으로 표시할 것

● 투자광고의 심의

- \*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후 협회심사 청구(단순 이미지 광고 및 지점광고 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후 광고가능)
- \* 협회의 심사 : 신고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투자회사에 통보
- \* 광고심사결과 유효기간
  - ▶ 운용실적을 포함하는 투자광고(신문 및 방송 이용) : 1개월
  - ▶ 기타투자광고 : 3개월

11.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

● 재산상 이익 X

- \*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
- \*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 화환

● 재산상 이익 제공한도(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시 한도 초과 가능)

- \* 1회당 한도 : 20만원
- \* 연간(동일 회계연도) : 100만원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관련 기록을 5년 이상 보관

12.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

● 채용금지기간(금지기간 5년 후 채용가능)

- \* 징계퇴직 처분,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 받은 자 : 처분일~5년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후 : 5년 이내

● 징계내역 보고 : 징계처분 부과한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보고

13. 계좌통합 및 계좌폐쇄 ★

● 계좌의 통합 :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 원 이하 + 6개월간 입출금 X →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

● 계좌의 폐쇄 : 계좌가 0원이 된 일로부터 6개월 후 계좌 폐쇄 가능 →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가능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14. 등록교육 : 최초로 등록할 경우 적용(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자 면제)

### 15. 보수교육

- 금융투자전문인력 :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의무
- 투자상담관리인력 :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6.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 5영업일 이내 협회신고

17. 주식의 평가 : 주관회사가 2사 이상인 때에는 평가업무를 공동으로 수행

18.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수요를 예측하여 협의하여 결정

### 19.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 ● 주식 공모 주관회사 제한 ★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주관회사의 주식 5%이상 소유
- \* 주관회사 -> 발행회사의 주식 5%이상 소유
- \* 주관회사+주관회사 이해관계인 -> 주관회사의 주식 10%이상 소유
- \* 주관회사의 임원 -> 발행회사의 주식 1%이상 보유
- \* 주관회사의 주식 5%이상, 발행회사의 주식 5%이상 소유주주가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공동주관업무 : 금융투자회사가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5%~10%인 경우 공동으로 주관업무 수행해야 한다.

###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

- 청약증거금(투자금) :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 의무
- \* 증거금 담보제공 금지
- \*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

#### ● 주식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 의무

#### ● 주식의 배정

- \* 우리사주조합원 : 공모주식의 20% 배정의무(코스닥시장 상장 시 20% 의무 X : 권고사항)
- \*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0%이상 배정 의무
- \* 기관투자자 : 배정 후 잔여주식 배정

###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 협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사용가능
- 수정사용 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 22. 개별약관

- 협회의 표준 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이 필요한 경우 제정하여 사용가능

-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2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 약관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 협회에 보고
-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변경하는 경우
-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신고한 약관의 내용이 다른금융투자회사의 미리 신고한 내용과 같은 경우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변경을 권고 가능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26. 분쟁조정

- 위원회 회부 :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정 : 사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조정의 성립 : 20일 이내 협회에 제출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 총 7인으로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 금융투자회사의 회원 : 제명, 회원자격의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 \* 임원 : 해임,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경고, 주의
  - \* 직원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  
**제4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 주주가 인수가액(주식소유가액)을 한도로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 회사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 **확정자본제도**
  - \* 설립시 : 자본총액을 확정(발행주식 총수 인수)
  - \* 증자시 : **주주총회특별결의** ⇨ 자본금액 변경
- **수권자본제도** : 발행예정주식총수 1/4 인수 ⇨ 필요에 따라 잔여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

3. 자본의 의미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이익배당의 제한
  - \* 액면미달발행 제한
  -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① 발기인 조합**

-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② 정관작성**

- \* 절대적 기재사항

- |          |         |                       |
|----------|---------|-----------------------|
| ▶ 목적     | ▶ 주금액   | ▶ 공고방법                |
| ▶ 상호     | ▶ 설립주식수 |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수권주식총수 | ▶ 본점소재지 |                       |

- \* 인증의무 :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의무 필요(정관변경 : 공증인 의무 X)

**③ 실체구성**

- \* 발기설립 : 발기인만이 발행주식 인수
- \* 모집설립 : 발기인 인수 후 나머지 주식분량을 주주에게 모집
  - ▶ **이사·감사선임** :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 이상 & 과반수**로 결의
- \* 설립절차 감독
  - ▶ 원칙 : 이사·감사 감독
  - ▶ 변태설립사항 : 법원선임 감사인, 공증인, 감정인

**④ 설립등기** : 실체구성절차 종료 후 **2주간 내**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 **설립무효 소송제도 인정 : 2년 내**
- **대세적 효력, 비소급효력**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 발기인의 책임
- \* 회사가 성립한 경우 : 회사에 대한 책임(자본충실책임, 손해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회사가 성립한 경우 X : 발기인 전원이 연대책임

● 이사·감사 등의 책임

□ 주식과 주권

8. 주식과 주권

● 주식의 종류

\*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상법상 액면주식만 인정 ★**

\* 기명주식 & 무기명주식 :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

\* 보통주식 & 우선주식 & 후배주식 & 혼합주식

\* **상환주식** : 이익에 의한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우선주만 인정)

\* **전환주식** :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주식(권리 : **전환권은 형성권**) ★

\* 무의결권 주식 : **발행한도(발행주식 총수 1/4, 상장법인 1/2)**, 배당 미지급 시 의결권 부활

● 주권 :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불완전 유가증권(**비설권증권**, 요식증권)

\*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9. 주주와 주주명부

● 주주 :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지위를 갖는다.

\* 주주평등의 원칙 : 강행법적인 성질의 기본원칙(위반할 경우 모든 규정 및 결의 무효)

\* 주주의 권리 ★

구분	내용		
자익권	✓ 주주의 재산적 개인권리 ✓ 종류 : 이익·이자배당 <b>청구권</b> , 잔여재산분배 <b>청구권</b> , 주권교부 <b>청구권</b> , <b>신주인수권</b> , <b>주식 자유양도권</b> 등		
공익권	단독주주권	주주공동을 위한 행사권리	✓ 종류 : <b>의결권</b> , <b>설립무효판결청구권</b> , <b>산주발행유지청구권</b> , <b>제무제표열람권</b> ✓ 1% : <b>위법행위유지청구권</b> , <b>대표소송제기권</b> ✓ 3% : <b>주주총회소집청구권</b> , <b>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b> , <b>회계장부열람청구권</b> , <b>이사 등 해임청구권</b> , <b>주주제안권</b> , <b>집중투표청구권</b> , <b>정리개시청구권</b> 등 ✓ 10% : <b>해산판결청구권</b>
	<b>소수주주권</b>		

● 주주명부

\* **주주명부의 폐쇄** : 권리행사를 확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전환주식**, **전환사채** 기능 : **의결권행사 불가능**)

▶ 공고 : 폐쇄일 **2주 전**

▶ 폐쇄기간 : 공고 후 **3개월 내**

\* 주주명부의 기준일(등록일) : 권리행사일 3개월 이내

\* 실질주주명부 : 상장법인에 해당(비상장법인 해당 X)

10. 주식양도

● **주식양도자유 원칙** : 법률, 정관에 정하였을 경우(법률, 정관 정함 X ⇨ **주식양도 금지**)

● **주식양도자유 제한**

\* **법률상의 제한**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권리주의 양도제한
-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제한 : 6개월 경과 후 효력 인정
- ▶ 자기주식 취득 금지 : 자기주식은 공익권과 자익권 X
- ▶ 상호주식 취득금지
  - 모자기업 : 모회사 =(50% ↑ 소유)=>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 비모자기업 간 : 10% 초과한 기업 상호간 의결권 제한 ★

\* 정관에 의한 제한 : 주식양도에 대하여 의사회승인 필요

### ● 주식의 양도방법

\*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 : 주권의 교부 즉시 발생

\* 기명주식은 명의 개서 필요

## 11. 주식의 담보

### ● 주식의 질권

\* 질권 설정과 효력 : 발행주식총수의 5%(1/20) 이내 가능

\* 기명주식의 입질(질권설정)

- ▶ 약실질 : 질권설정합의 + 주권교부
- ▶ 등록질 :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 양도담보 : 주식의 입질(질권설정합의+주권교부에 의하여 담보의 효력이 발생) + 처분승락서가 첨부 ★

##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 ● 주식의 소각

\* 이익소각 :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회사의 법정준비금으로 대체)

- ▶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함(원시정관, 총주주의 동의)
- ▶ 정관규정 등기
- ▶ 상장법인 : 이사회 결의(정관에 정한 경우)
- ▶ 주식소각한도 : 이익배당이 가능한 범위 내

● 주식의 병합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

● 주식의 분할 : 주주총회 특별결의(액면 100원 미만 X)

##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발행주식총수 10%(상장회사 : 20%)

##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모회사의 신주 <=> 자회사 주식 100%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모회사의 주식 100% <=> 신설회사의 신주

## □ 회사의 기관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법정 필요 상설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15. 주주총회 :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관한 주주의 의사를 집약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내부적 기관

● 주주총회의 권한 ★★

구분	필요 참석 수	필요 결의 수	주요 결의사항
보통결의	발행주식 총수 1/4 ↑	과반수	✓ 이사·감사·청산인 선임 및 보수결정 ✓ 청산인의 해임 ✓ 재무제표 승인, 주식배당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수 1/3 ↑	2/3	✓ 이사·감사의 해임 ✓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자본감소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CB, BW 발행 ✓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및 일부 양도
특수결의	총주주	전원동의	✓ 이사의 책임면제 ✓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 주주총회 소집

구분	소집주체	내용
소집권자	이사회(원칙)	대표이사가 절차에 따라 소집
	소수주주	3% 이상(대형상장법인 : 1.5% 이상) 소수주주 소집청구 ⇨ 이사회, 법원
	감사	감사 소집청구 ⇨ 이사회, 법원
	법원	대표이사에게 소집 명령
소집시기	정기총회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임시총회	필요시 상시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시기가 다르지만 권한은 동일	
소집절차	통지기한	주주총회 2주전
	통지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생략	✓ 의결권 없는 주주 ✓ 3년간 주주에게 도달하지 않은 주식 ✓ 일간지에 2주전 2회 이상 총회소집 공고

● 주주제안권 : 3% 이상 소수주주만 인정

● 의결권

\* 강행법규 : 1주 당 1의결권(의결권 대리행사 가능)

\* 불통일행사 가능 : 회의 3일전 서면통지

\* 서면결의 가능

\* 의결권행사 제한

- ▶ 자기주식 및 이해관계자, 무기명주권 소지인
- ▶ 감사 선임 시 : 대주주(3% 이상) 초과분
- ▶ 타 회사의 주식 10% 초과 소유

● 주주총회 결의 : 의결권 없는 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불산입 ★

● 종류주주총회 : 특정종류 주주의 손해가 미칠 경우 주주총회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당사자 및 제3자에게 효력), 소급효력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
- \* 이사 선임 : **주주총회 보통결의**
- \* 이사 원수 : **3인 이상**(자본금 5억 원 미만 : 1인 이상)
- \* 이사의 자격 : 감사 X
- \*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 : **법원결정**
- \* 사외이사 : **이사총수 1/4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 1/2 이상(최소 3인 이상)**
  
- 이사회 :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하는 업무집행기관
- \* **이사회 결의 : 과반수 출석 + 과반수 동의**
- \* 권한 업무 : 의사결정권, 업무감독권
  - ▶ **대표이사 선임**
  - ▶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 ▶ **주주총회 소집**
- \* 이사 내 위원회 : 2인 이상
  
- **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업무집행권, 대표권) ★
  
- 이사의 의무 :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사회의 보고의무, 손해보고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이사회 승인 X : 금지)
  
- 이사의 보수 : 주주총회 보통결의
  
- 이사의 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연대책임)
  
-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주식총수의 1% 이상의 소수주주, 감사
- \* 대표소송권 : 주식총수의 1% 이상의 소수주주

### 17. 감사

- 감사의 선임 : 주주총회 선임(**3% 이상 주주 : 의결권 제한**), 회사와 위임관계
  
- 감사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보고 청구권</li> <li>* 업무 재산상태 조사권</li> <li>* 자회사 감사권</li> <li>* 이사회 참석권(이사회결의결권 X)</li> <li>* 손해보고 수령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li> <li>* 주주총회 소집청구권</li> <li>* 감사해임에 대한 의견진술권</li> <li>*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권</li> </ul>
--	--

### 18. 감사위원회 : 업무감독권, 회계감독권을 가지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설치의무)

- 구성 : 3인 이상(**사외이사 2/3 이상** :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감사위원 1/3 이상 X)

### □ 신주의 발행

### 19. 발행사항의 결정 : 이사회 결의(원칙)

- **신주의 발행가액 : 이사회 결정(액면미달발행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효력발생 : 납입기일의 익일(주식관련 사채 : 당일효력발생)**
- **현물출자 : 성명,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신주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해야 함**
- **일부효력발생 : 인수납입이 있는 일부 신주에 대하여만 신주발행효력 발생**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 회사설립 후 2년 경과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법원의 인가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

### 21.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 적용 예외 :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원 배정
- 제3자의 신주인수권 :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가능(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국한)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 이사회 결의

### 23. 신주발행의 절차

신주발행 및 사항 결정 ➡ 신주배정일 지정 및 공고 ➡ 주주모집 ➡ 청약 ➡ 신주배정 및 인수 ➡ 신주의 효력발생 ➡ 등기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현실적으로 인수가 없는 주식에 대하여 지는 것

25. 신주발행 유지 : 단독주주권

###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제소권자 : 주주, 이사, 감사**
- **효과 : 대세적 효력(제3자에게도 효력발생), 비소급적(과거 적용 X, 미래 적용 O)**

###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7. 정관변경의 효력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결의와 동시에 발생, 공증의 의무(공증인의 인증 불필요)

### 28. 자본감소의 방법

- **주금액의 감소(액면가 감소)**
- **주식수의 감소(발행주식총수 감소)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행위**
- \* 강제소각과 임의소각
- \*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 본점소재지 2주간 내, 지점소재지 3주간 내**
- **판결의 효력 : 대세적 효력, 소급효력**

### □ 회사의 계산

####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이사 : 매 결산기에 작성 ➡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 대차대조표 공고**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1. 준비금 : 재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액을 회사에 보유하는 유보금액(법률·정관·총회 결의)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 법정준비금 ★

분류	내용	
이익준비금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 까지 적립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준비금(모두적립 : 제한 한도 X) (액면초과금, 감자잉여금, 합병차익금, 분할차익금, 주식교환차익금 등)	
법정준비금 용도	결손전보	자본의 결손을 전보하는 목적에만 사용
	자본전입	자본에의 전입 가능(이사회 결의)

- 임의준비금 :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 32. 이익배당

- 결산배당 : 영업연도 말 손익 확정 후 배당
- 중간배당 : 연 1회, 금전배당만 인정 ★
- 배당금지급 : 1개월 이내 지급(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 33. 주식배당 : 주주총회 보통결의

- 한도 : 이익배당총액 1/2 이내(상장법인 : 이익배당총액까지 가능)
- 권면액을 기준으로 발행가액 결정
- 효력발생시기 : 주주총회 종결 시

###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채무제표 등의 열람권 : 단독주주권
- 회계장부 열람권 : 3% 이상 주주 권리
-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3% 이상 주주권리

### □ 사채

###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

구분	주식	사채
성격	자기자본	타인자본(부채)
경영참여	참여	참여 X (주권관련사채 제외)
이익배당	이익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자지급 의무
우선변제권	X	O
분할납입	X	O
액면미달발행	X (원칙적)	O
자기주식취득	X (원칙적)	O
납입금상계	X	O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 ⇨ 사채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납입가능)

###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 총액의 제한 : 순자산가액의 4배 초과금지
-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구사채 액은 사채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채모집의 제한
- 사채금액 : 1만 원 이상 균일 또는 최저액으로 정제가 가능
- 권면액초과상환 제한
- 사채발행의 결정 : 이사회 결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이자지급청구권, 이권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권 : 5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 상환청구권, 상환액지급청구권 : 10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38. 특수사채

- **전환사채** : 사채를 당해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권리행사 시 사채권 지위 소멸) ⇨ 이사회 결의
-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인수권(별도출자금 필요 : 전액 납입 후 주주권리 발생 / 권리행사 시 사채권 존속) ⇨ 이사회 결의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 합병결의 : **주주총회특별결의(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이사회의 승인)**
- 합병의 효과
  - \* 회사의 소멸 : 회사의 변경
  - \* 원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 총회 결의일 ~ **20일 이내**
- 효력 : 등기 후 효력발생
- 합병무효소송의 판결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40. 회사의 분할 : 주식회사만 인정

- 분할의 종류
  - \*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 \*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 분할의 무효 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제5장 증권세제

□ 국제기본법

1. 조세의 분류

분류기준	구분	종류
과세주체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과세표준단위	증가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증량세	골프장입장 개별소비세, 인지세, 지역개발세 등
세율의 구조	비례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누진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시
-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구분	구분	성립시기
기간별과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사건별과세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증권거래세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5.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X 로서 세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li> <li>•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초과하는 때</li> <li>•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미달하는 때</li> </ul>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세액과 가산세 결정통지 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 : 50%</li> <li>• 6개월~1년 이내 : 20%</li> <li>• 1년~2년 이내 : 10%</li> </ul>		• 1개월 이내 50%

###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

- **선 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재산에 부여된 상속세, 증여세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임차보증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임금채권**

###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성격	임의적 절차	택 1(불복불가)	
결정기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결정방법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청구기간	90일 이내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행정심판 전치주의** : 심사 및 심판 청구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제요건이 되어 있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

### □ 소득세법

#### 9.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외국인포함) → 국내외 모든 소득 납세의무
-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 10. 소득별 과세방법

##### ● 종합과세

\* 매년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 분류과세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각 소득별로 소득세를 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만큼 징수

##### ● 비과세 소득

#### 11. 이자소득의 범위

- 환매조건부채권 및 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의 계약)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지급일 기준** : 무기명,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저축성보험

#### 13. 의제배당

- 감자, 해산, 합병, 분할 : 대가-취득가액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 14. 원천징수세율

거주자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 신청) : 30%</li> <li>● <b>비영업대금의 이익</b> : 25%</li> <li>●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 14%</li> <li>● 배당소득 : 14%</li> <li>●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명의 확인 X) : 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조약이 체결 X 국가 : 25%</li> <li>●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li> </ul>

####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 개인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료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4,000만원 초과시 : 종합과세

### 16. 종합소득공제 ★★★

구분	공제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1인당 150만원</li> <li>●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 200만원</li> <li>✓ 경로우대(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li> <li>✓ 부녀자 세대주 본인 : 50만원</li> <li>✓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1인당 100만원</li> <li>✓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 입양자 : 1인당 200만원</li> </ul> </li> </ul>
다자녀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 이하 자녀 2인 : 연 100만원</li> <li>● 2인 초과 공제자 : 연 200만원과 초과 1인당 200만원의 합계액 공제</li> </ul>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료 전액공제</li> <li>● 근로소득자 대상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li> </ul>

### 17.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 18. 상속세 확정신고 : 5월 1일~31일 이내 ★★★

□ 상속세 및 증여세

###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 비과세상속재산
	+	증여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상속재산 : 생명 및 손해보험금, 피상속인 신탁재산, 퇴직금 및 퇴직수당</li> <li>• 전사 등의 가족 상속재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 및 문화재 등 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 이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li> </ul>
	+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	과세가액불산입액	재산종류별 2~5억 이상이고 용도 불명한 것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	과세가액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장례비용 : 일반장례비용(500~1,000만원), 봉안시설비용(500만원 한도)
	=	상속과세가액	
상속세과세표준	-	기초공제	2억 원 + 가업상속재산 + 영농상속재산
	-	배우자 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상속재산 : 60억, 80억, 100억 원</li> <li>• 영농상속재산 : 2억</li> </ul>
	-	기타인적공제	5 ~ 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하단 참고 ★★★
	-	재해손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금융자산 2천만 원 이하</li> <li>• 순금융자산 2천만 원 초과</li> <li>• 순금융자산 1억 원 초과</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액 2천만원 20% 공제</li> <li>• 2억 원 한도</li> </ul> </div>
-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 ~ 신고기한 발생한 손실가액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 기타비용(총 1천만 원 한도)
	=	상속세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시 부과하지 아니함
산출세액		세율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산출세액	
차감납부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상속(10~100%로 단계적 공제)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징수세액) × 10% 공제
	-	연부연납, 물납신청금액	
=	차감납부세액		

### ※ 인적 공제 ★★★

구분	공제내용		공제액	비고
일반공제	배우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속재산 분할 신고 : 상속받은 재산가액</li> <li>상속재산을 분할X or 상속금액이 5억 원 미만 : 5억원</li> </ul>	법적지분과 30억 원 적은 금액 한도
	기타 인적 공제	자녀 공제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인당 500만원 X 20세까지 年수	동거, 직계비손, 형제, 자매
		경로 공제	1인당 3,000만원	동거가족 60세 이상
	장애자 공제	1인당 500만원 X 75세까지 年수		
일괄공제	일반상속		5억 원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
	가업상속		6억 원	
	영농상속		7억 원	

###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본래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의제(추정)가액
+	재차증여재산가액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비과세재산가액	일정 비과세 증여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	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시 비과세
×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 21. 증여재산 공제액 ★★

구분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성년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 22. 신고와 납부기한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국외거주 시 9일)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 23. 물납과 연부연납

- 물납
-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 분납

-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X
-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X

구분	분납액
1천만 원~2천만 원	1천만 원 초과액
2천만 원 초과	50% 이하 금액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 기본세율 0.5% ★

구분	분납액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양도	0.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양도	0.3%
상기 외 주권	0.5%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